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 및 추진전략

A Study on Revision of the Ordinance for Women
in Daejeon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최길수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이한태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최길수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이한태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요 약

1. 연구의 배경과 방법

-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을 ‘대상’ 으로 규정한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가 있었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여성정책을 성인지적(性認知的, gender-sensitive)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대상화된 여성이 아닌 주체적인 여성과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조례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할 필요 있음.
- 또한, 경제활동과 정치 및 사회적 대표성 강화 활동, 가족 안에서의 삶과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따른 삶의 변화, 인권과 권익의 증진과 관련한 활동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과 조례 조항 등을 종합하여 ‘기본’ 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 중앙정부 및 16개 시도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법률자료를 수집하여 그 특징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 등에 관한 행정자료를 분석함.
- 조례 개정안 도출을 위하여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와 연구자들과 함께 워크숍 및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별 자문회의와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 또한, 연구진의 개정안을 가지고 시민워크숍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였음.

2.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특성과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는 복지여성국 하위 조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청소년과 내에 여성정책 및 성주류화정책 추진 조직으로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두고 있음.

-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대전시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은 53,811백 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8%임.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2년 수립한 여성정책 실행계획에 담긴 주요 여성정책 과제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성인력의 활용,’ ‘여성의 권익 보호,’ 그리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영역이 있으며, 각 영역마다 세부추진과제들이 구성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가 2011년 12월 발표한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전국 평균보다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경제 세력화 영역은 고용률과 관리직 지표가, 삶의 질 영역의 경우 범죄안전도와 육아휴직 지표 값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사회통합 영역은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조례 제3063호로 2001년 12월에 제정되었음.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1년 제정된 후 2009년 2월까지 5차의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2008년 4차 개정 시 성별영향평가 조항을 명시하였음.
- 현행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6개의 장에 5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여성정책, 제3장은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복지기금, 제5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제6장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4.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16개 시도의 조례 명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성평등기본조례」이며, 강원

도와 전라남도는 「여성발전조례」,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정책기본조례」이고, 그 외 광역지방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명칭하고 있음.

- 대부분 시·도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취할 것을 책무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시·도의 책무로 교육 및 홍보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예로는 대전광역시(제3조)와 제주도(제3조)가 있음.
- 16개 시도 모두 여성정책 관련 장에 ‘주요정책추진실적의 평가’,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근거규정과 정책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단순 평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정책이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성인지적 정책반영의무를 명시화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임.
- 추진체계로 16개 시·도의 조례에서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여성위원회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여성발전위원회’와 ‘성평등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가 함께 제시되고 있어, 여성발전정책과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음.

5.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

- ‘대전광역시여성발전조례’의 명칭을 ‘대전광역시성평등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요청, 삶과 가치의 변화된 상황에 부합함.
- 총칙에는 성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조례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제·개정에 따른 성 주류화 조치로

인해 개정안에 ① 시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수립·시행되고 평가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한 의무규정, ② 성별분리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정의 구체화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교육 규정과 성 주류화 조치간의 연계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함.

-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정책책임관을 중심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한 성평등 정책 수행 점검과 환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책임관 지정을 명시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에 있어서도 조례명을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는 입법목적에 따른다면, ‘성평등실현기금’ 과 같은 명칭으로 개정이 바람직하며,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성평등 촉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

- 목 차 -

제 1 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6
제4절 기대효과	8
제 2 장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특성과 주요내용	13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13
제2절 성평등 촉진 시책 관련 현행 법제 성격과 주요내용	28
제3절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39
제 3 장 성평등 확산을 위한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제	51
제1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51
제2절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72
제 4 장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	103
제1절 조례의 명칭	103
제2절 총칙	105
제3절 여성정책	106
제4절 여성정책위원회	108
제5절 여성발전·복지기금	108
제6절 실효성 제고	109

제 5 장 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개요	113
제1절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안) 전문	113
제2절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안) 조문 대비표	129
 참고문헌	 151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155
부록 2.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워크숍	164

- 표 목 차 -

< 표 1-1 > 조례 개정안 연구를 위한 주요 연구 절차 개요	7
< 표 2-1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담당부서 인력 현황	13
< 표 2-2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담당부서 예산 현황	14
< 표 2-3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14
< 표 2-4 > 대전광역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15
< 표 2-5 > 대전광역시 여성공무원 현황	15
< 표 2-6 > 대전광역시 소속 여성정책연구기관 현황	17
< 표 2-7 > 대전광역시 소재 여성관련 시설 현황	17
< 표 2-8 > 2012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여성인력의 활용	18
< 표 2-9 > 2012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여성의 권익보호	19
< 표 2-10 > 2012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20
< 표 2-11 > 지역 성평등지수의 4개 영역과 개별 지표	22
< 표 2-12 >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3
< 표 2-13 >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24
< 표 2-14 > 대전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25
< 표 2-15 >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27
< 표 3-1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비교	52
< 표 3-2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개정사유 비교	57
< 표 3-3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 정의규정의 비교	59
< 표 3-4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성희롱 정의규정의 비교	60
< 표 3-5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성차별과 성인지에 대한	

정의규정	61
< 표 3-6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심의조정기구 비교	62
< 표 3-7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 비교	63
< 표 3-8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여성친화도시 조항 비교	67
< 표 3-9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 조항 비교	68
< 표 3-10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성 주류화 관련 조항 비교	69
< 표 3-11 >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 명칭 현황	72
< 표 3-12 >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체계와 구성 현황	77

- 그림 목 차 -

[그림 2-1]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3
[그림 2-2]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5
[그림 2-3] 대전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6
[그림 2-4]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27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1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그 동안 대전시 여성정책추진의 근거로 작용해 왔으며, 조례를 통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정책과 관련한 인식과 정책 접근 방법, 양성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다양한 정책 육구의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어선 지금, 여성정책을 둘러싼 정책 패러다임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으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시민의 욕구와 정책 내용 역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을 ‘대상’으로 규정한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등장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여성정책을 성인지적(性認知的, gender-sensitive)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대상화된 여성이 아닌 주체적인 여성과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1995년 개최된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는 여성정책 추진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성 주류화 전략(Gender-Mainstreaming Strategy)’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최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각 시도 여성정책의 논리적 바탕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성인지통계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로 요약되는 성 주류화의 핵심 전략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뿐 아닌, 모든 정책 사업이 얼마나 혹은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평가·분석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기존의 여성정책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투영하여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화하는 정책 접근 방식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성불평등성을 분석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변화를 반영하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과 성평등 개념, 그리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과 정치 및 사회적 대표성 강화 활동, 가족 안에서의 삶과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따른 삶의 변화, 인권과 권익의 증진과 관련한 활동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과 조례 조항 등을 종합하여 ‘기본’ 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앙정부는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이름을 ‘여성정책기본법(안)’으로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국회 내부에서도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수정하여 ‘성평등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대전광역시도 위와 같은 여성 정책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변화된 정책 환경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성 주류화 전략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으나, 성인 지적 관점의 확산과 인식의 개선, 성인지통계와 성인지예산제도 등 성 주류화 핵심 전략 관련 용어와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친화적인 도시,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지원 등 새로운 여성 및 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 역시 미흡하여 대전광역시 여성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조례로서의 위상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의 새로운 내용과 용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성평등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시책의 내용, 그리고 추진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현황을 반영한 성평등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지원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 현 대전시 조례의 경우, 여성 사회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외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목표를 명시한 조항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조례 명칭에서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시책의 내용과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조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여성정책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시행 근거 규정을 개선하고 보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1년 12월 제정된 이래 2009년 2월까지 5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으나,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 용어와 개념, 새로운 정책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는 여성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전 여성의 삶 전반의 변화를 포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목표와 그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전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제고하고,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주류화 전략과 관련 제도의 추진 기반 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근거 규정을 강화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첫째, 현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현 조례는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성 주류화

관련 전략-성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 그 내용을 검토하고 현 조례의 특성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현 16개 시도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이번 대전시 조례 개정에 필요한 내용과 의미를 찾고자 한다. 또한,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른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 집단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목표, 그리고 여성정책 추진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

셋째,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례의 명칭에서, 새로운 용어의 활용, 조례 체계와 구성을 비롯한 세부 사항까지 개정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전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요청을 포괄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현 조례와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기존의 유사한 연구문헌과 행정자료, 법률자료 등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와 관련 전문가 및 여성계 활동가를 활용한 자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와 토론회, 세미나 자료 등을 분석하였으며, 대전시 조례의 개정 과정과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자료도 참고하였다.

중앙정부 및 16개 시도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법률자료를 수집하여 그 특징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 등에 관한 행정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궁극적으로 대전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향상, 그리고 성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연구해 온 여성단체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기회를 가졌다. 개인과 집단 인터뷰를 비롯하여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또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대전성평등정책포럼을 통하여 지역 여성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진의 개정안을 가지고 시민워크숍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1-1 > 조례 개정안 연구를 위한 주요 연구 절차 개요

연구 절차	연구내용 및 방법	시기
전문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 연구를 중심으로 한 사례 검토 	2월
↓		
지역 전문가 자문회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단체 대표, 활동가 및 실무자와의 토론 ■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 <li style="padding-left: 20px;">주제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아젠다 발굴 	4월
↓		
지역 전문가 자문회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 연구자, 젠더전문가와의 토론 ■ 타시도 유사사례 연구자 초청 간담회 	4월~5월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정책특별보좌관, 복지여성국장, 지역 여성단체 대표, 교수 및 연구자, 언론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자문 	5월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문가와의 공개 질의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단체 대표 또는 실무자; 대전시의회의원; 지역 여성정책연구자; 타 시도 여성정책연구 전문가; 시민 등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의 	6월
↓		
대전시 실무 담당자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 대전시여성정책담당 등 지자체 실무 담당자들과의 회의 	6월

법학자와 행정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로 이루어진 내부 연구진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조문안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전에 법률전문가의 감수와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

제4절 기대효과

최근 대전광역시뿐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2009년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기본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2011년에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성평등정책기본조례’로 새로운 명칭을 제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서영주 외, 2011)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조례 개정 움직임은 2010년부터 발의된 ‘성평등기본법(안)’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법(안)’의 영향이 크며, 이 법안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그 내용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조례에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성평등 개념을 도입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성평등 실현의 구체적 목표와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대전광역시는 기존의 여성정책이 지닌 논리적 근거와 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새로운 여성정책의 내용으로는 성주류화 전략, 즉 성인지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가 담겨져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는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성주류화 실행 교육의 추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특성과 주요내용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제2절 성평등 촉진 시책 관련 현행 법제 성격과
주요내용

제3절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제 2 장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특성과 주요내용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한다. 대전시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최근 정책 환경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 정립과 위상 정립을 추구하고 있다.

1. 여성정책 추진체계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복지여성국 하위 조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청소년과 내에 여성정책 및 성주류화정책 추진 조직으로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두고 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여성정책담당, 가정복지담당, 청소년담당, 아동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선 5기 들어 대전광역시장은 여성특별보좌관을 두고 여성정책 관련한 전문가 자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표 2-1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담당부서 인력 현황

여성정책담당부서 인력 (2012. 1. 31현재)	· 여성정책 담당인원 수 / 총 부서인원 수	7명/19명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정책 담당자 성비	7명(女 4, 男 3)

	· 여성 특별 보좌관	1명(女)
--	-------------	-------

여성정책담당인력은 총 7명으로, 양성평등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여성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취업증대와 사회참여, 여성자원활동 지원사업, 여성의 권익보호·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그리고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대전시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2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담당부서 예산 현황

여성정책담당부서 예산 (' 12년 예산 기준, 백만원 단위)	· 총 액	53,811백만원 (시 예산액 2,911,992백만원)
	· 지자체 총예산대비 비율	1.8%

여성정책전담을 위한 예산은 시 총 예산의 1.8%에 머무르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두 위원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3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2012. 1. 31현재)	· 여성정책위원회	15명 (여성11, 남성4)
	· 여성발전복지기금심의위원회	12명 (여성9, 남성3)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민간 자문위원들로부터 청취하고 있다.

대전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4 > 대전광역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2012. 1. 31현재)	·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16명
	·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전체기초의회 의원 수)	25.6% (16/63)*100
	·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5명
	·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전체광역의회 위원 수)	19.2% (5/26)*100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약 25%에 이르고 있으며,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약 19%를 보이고 있다. 여성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광역시의 공무원은 2012년 1월 현재, 총 3238명으로, 이들 중 여성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5 > 대전광역시 여성공무원 현황

여성공무원 현황 (2012. 1. 31현재)	· 총인원 수	591명 (전체 3,238명의 18%)
-----------------------------	---------	-----------------------

구 분	남	여	합
	계	2,647	591
차관(급)	1 (100%)		1
고위 공무원	2 (100%)		2
2급	2 (100%)		2
3급	8 (100%)		8
4급	67 (94%)	4 (6%)	71
5급	220 (89%)	28 (11%)	248
6급	433 (85%)	78 (15%)	511
7급	299 (66%)	156 (34%)	455
8급	58 (57%)	43 (43%)	101
9급	6 (33%)	12 (67%)	18
기능직	340 (73%)	126 (27%)	466
연구관	14 (82%)	3 (18%)	17
연구사	33 (47%)	37 (53%)	70
지도관	2 (67%)	1 (33%)	3
지도사	18 (69%)	8 (31%)	26
소방직	1,069 (95%)	62 (5%)	1131
전임	57 (72%)	22 (28%)	79
1급상당	1 (100%)		1
4급상당	3 (100%)		3
5급상당	5 (100%)		5
6급상당	5 (71%)	2 (29%)	7
7급상당	3 (30%)	7 (70%)	10
8급상당	1 (33%)	2 (67%)	3

· 직급별 여성비율

소방직을 제외한 대전시 공무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7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대전시에는 소속 여성정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시 출연연구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를 2011년 3월에 개소하였다.

< 표 2-6 > 대전광역시 소속 여성정책연구기관 현황

지자체 소속 여성 정책연구기관 (2012. 1. 31현재)	· 명 칭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설립년도	2011년
	· 인력(연구인력/사업인력/ 행정인력 구분)	5명(연구인력5)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박사2, 석사1, 학사2)
	· 대전발전연구원 부설기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시 소재 여성관련 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7 > 대전광역시 소재 여성관련 시설 현황

여성관련 시설	· 시설유형별 시설 수	총 : 25개소 - 여성복지시설 : 9개소 - 성·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 11개소 - 24시간 긴급상담 및 보호 : 3개소 - 자활센터 및 이주여성쉼터 : 2개소
---------	--------------	--

대전시가 운영하는 여성복지시설은 9개소, 폭력관련 상담기관은 11개소이다. 상담과 보호, 쉼터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5개소로 나타나 있다.

2. 여성정책 추진과제 주요내용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2년 수립한 여성정책 실행계획에 담긴 주요 여성정책 과제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 ‘여성의 권익 보호,’ 그리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영역이 있으며, 각 영역마다 세부추진과제들이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총 31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 예산은 약 3천 9백 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세부 추진 사업	예산(백만원)
31개 사업	396,621

첫 번째 주요 영역인 여성인력의 활용 부문에서는 4개의 세부 영역이 나뉘어 있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8 > 2012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여성인력의 활용**

일련 번호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1.		여성인력 활용	
	1 - 1	여성인력활용기반 내실화	
1	1-1-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활동	2,056
2	1-1-2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 총괄·조정	6
	1 - 2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3	1-2-1	여성농업인 등 여성경제인 지원	115
4	1-2-2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비예산
5	1-2-3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비예산
	1 - 4	여성일자리 확대	
6	1-4-1	중앙-지역 공동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775
7	1-4-2	지역전략산업체의 여성일자리 확대	361
	1 - 5	여성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8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178,057
9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24,152
10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2,142
11	1-5-4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13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은 직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여성 취업

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사업이나 여성경제인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 전략 산업체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 등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여성의 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 사업이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보육과 관련한 부분이다. 여성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사업이 그 어떤 여성 인력 활용 사업보다도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도 보육과 돌봄 관련 세부 사업과 유사한 맥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행계획 내용 중 두 번째 주요 영역은 다양한 여성, 취약한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 표 2-9 > 2012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여성의 권익보호**

일련 번호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2		여성의 권익보호	
	2 - 1	여성의 건강보호	
12	2-1-1	여성건강 증진 사업 실시	2,554
	2 - 2	대상별 여성복지욕구 충족	
13	2-2-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118,618
14	2-2-2	한부모가족 지원	4,253
15	2-2-4	미혼모 지원	524
16	2-2-5	여성노인 지원	32,993
	2 - 3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30,002
17	2-3-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	25,577
18	2-3-2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향상	85
	2 - 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9	2-4-1	여성아동 폭력에 대한 사회적의식 제고	54
20	2-4-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746
2 -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21	2-5-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12
22	2-5-2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	456
23	2-5-3	성매매 피해 청소년보호 및 지원강화	212
24	2-5-4	성매매지역 및 시설단속	84
2 - 6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25	2-6-1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 지원	2,381
26	2-6-2	다문화 여성 지원체계 구축	20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는 빈곤여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이, 큰 차이지만, 그 뒤를 잇고 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요 여성 집단은, 위 사업 대상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빈곤여성과 한부모, 미혼모,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그리고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다문화가족 여성으로 나타나 있다.

**< 표 2-10 > 2012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 제 명	예산액 (백만원)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3 - 1	성인지 정책의 시행	
27	3-1-1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성별통계 확립	4
28	3-1-3	공무원 성인지교육의 실시	4
	3 - 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29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157

30	3-2-2	시민사회와의 협력	192
3 - 3		평등문화 확산	
31	3-3-1	평등문화 확산	18

여성정책기본계획 실행계획 마지막 영역은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강화’이다. 이 영역의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통계 생산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성정책 협의 및 조정 사업으로는 여성발전기금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여성정책위원회의 운영이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사업과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대전시 내 중고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과 교육 강사들의 보수 교육비로 구성되어 있다.

3. 대전시 성평등지수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는 2011년 12월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여성정책의 시도별 추진 효과와 성평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성평등 정책 실행 효과와 성평등 실태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추진된 이 연구보고서에는 지역별로 인구구성, 경제 및 사회구조, 의식 및 문화 영역에 따라 지역특화 성평등 전략 수립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역 성평등지수의 영역, 영역별 지표는 아래와 같이 4개 영역 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표 2-11 > 지역 성평등지수의 4개 영역과 개별 지표

부문 (지표 수)	연번	부문별 대표지표	비고
① 여성의 대표성 제고 (4개)	1-1	광역 의회의원 성비	
	1-2	기초 의회의원 성비	
	1-3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성비	
	1-4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② 여성의 경제 세력화 (4개)	2-1	고용률 성비	
	2-2	남녀 임금격차	
	2-3	관리직의 성비	
	2-4	전문직의 성비	
③ 여성의 삶의 질 제고 (5개)	3-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3-2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3-3	범죄피해에 대한 안전인식 성비	
	3-4	육아휴직 사용 성비	
	3-5	가정폭력 여성피해자 수	
④ 소외여성 사회통합 (4개)	4-1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4-2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4-3	노후준비자 성비	
	4-4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가구 비율 성비	
가점영역	5-1	여성발전기금 규모	지역여성인구 대비
	5-2	여성관련 법 및 규정	
	5-3	보육아동 대비 보육비 예산	4시간 이상 교육기준
	5-4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	
	5-5	공무원대상 성인지교육 참여비율	

출처 : 여성가족부, 2011.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나타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은, 16개 시·도가 모두 낮은 상황에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2-12 〉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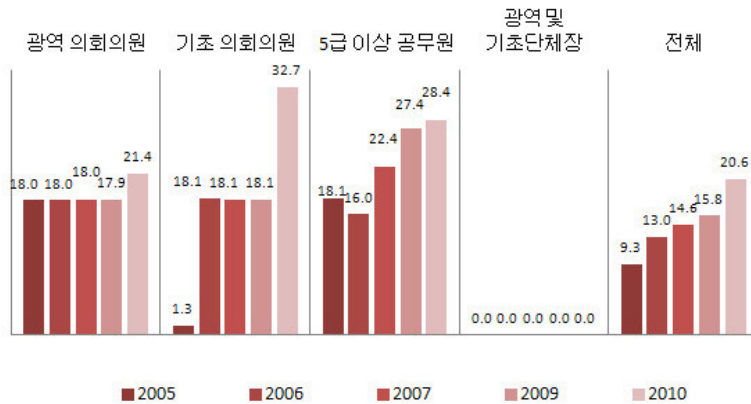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광역시 의회의원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광역시 및 기초 자치단체장	전체
대전광역시	21.4	32.7	28.4	0.0	20.6
전체 1위 지역	20.8	37.8	38.0	6.2	25.7
전체평균	16.9	26.8	22.2	2.0	17.0

대전광역시의 대표성 영역은 분석기간 중 성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황을 보였으며, 세부 지표 값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광역 및 기초 의회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지표 값은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은 다소 낮았다. 특히 여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명도 없어, 이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2-1] 대전광역시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출처 : 여성가족부. 2011.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5급 이상 공무원 지표 값을 보면 2006년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5년 18.1에서 2010년 28.4가 되었는데, 그로인해 전반적으로 대전

광역시의 대표성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평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세력화 영역의 성평등 지수 값은 58.8로 전국 평균 61.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 여성의 비율에 비하여 경제 활동 참여가 낮은 대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표 2-13 >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세부지표 비교(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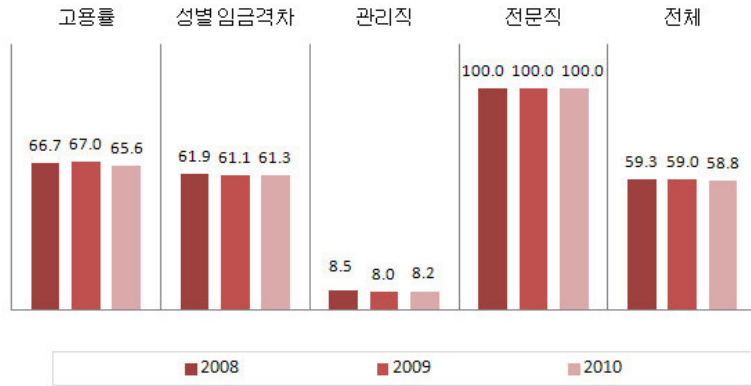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관리직	전문직	전체
대전광역시	65.6	61.3	8.2	100.0	58.8
전체 1위 지역	79.9	63.5	14.3	100.0	64.4
전체평균	68.2	60.6	15.1	100.0	61.0

세부 지표 값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고용률, 관리직 지표 값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남녀임금격차 지표 값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관리직 지표 값 모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대전광역시 경제 세력화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출처 : 여성가족부. 2011.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고용률 지표 값은 2009년에 소폭 증가한 이후, 2010년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 지표 값은 2008년 61.9에서 2008년 61.1로 하락한 이후, 2010년 61.3으로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리직 지표 값은 2009년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대전 여성의 삶의 질 영역 성평등 수준을 16개 시·도 지역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4 > 대전광역시 삶의 질 제고 영역 세부지표 비교(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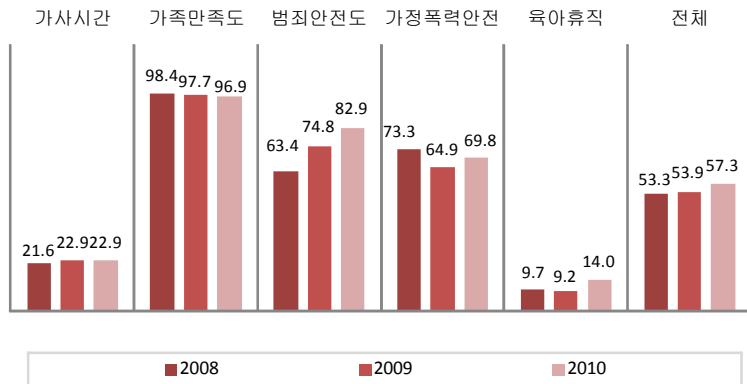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가사시간	가족만족도	범죄안전도	가정폭력 안전	육아휴직	전체
대전광역시	22.9	96.9	82.9	69.8	14.0	57.3
전체 1위 지역	29.5	99.7	88.6	74.4	26.5	63.7
전체평균	20.1	93.8	86.0	65.5	20.0	57.1

가사시간과 가족만족도, 가정폭력 안전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범죄안전도와 육아휴직 지표 값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비교하면 모든 지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 대전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출처 : 여성가족부. 2011.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가사시간 지표 수준은 2009년에 소폭 상승하였고, 가족만족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국평균보다는 높았다. 범죄안전도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 안전도의 성평등수준은 2009년 하락한 뒤에 2010년 다시 개선되었으나, 2008년 수준보다 낮았다. 육아휴직은 2010년 상승하여 2010년 14.0이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대전광역시 삶의 질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2008년 53.3에서 2010년 57.3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외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16개 시·도 지역과 비교하면, 대전광역시 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속한다.

< 표 2-15 >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세부지표 비교(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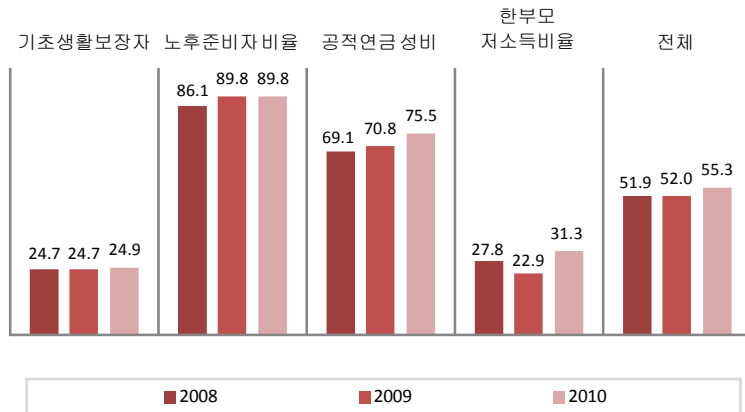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기초생활보장자	노후준비자 비율	공적연금 성비	한부모 저소득비율	전체
대전광역시	24.9	89.8	75.5	31.3	55.3
전체 1위 지역	26.5	88.5	80.0	58.4	63.4
전체평균	23.4	85.5	69.7	32.1	52.7

기초생활보장자와 노후준비자 비율, 공적연금 성비에 대한 성평등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에 대한 성평등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비교하면 노후 준비자 비율에 대한 성평등 수준이 전체적으로 성평등한 지역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모든 지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단위 : 완전평등수준=100.0)



출처 : 여성가족부. 2011.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성평등 수준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후준비자 비율과 공적연금 성비 지표 수준은 성평등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각각 89.8

과 5.5가 되었다.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은 2009년 감소했지만 2010년 31.3으로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2008년 51.9에서 2010년 55.3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6개 시·도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면서, 대전광역시 성평등 현황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 영역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지표를 제외하고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성평등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 세력화 영역은 고용률과 관리직 지표가, 삶의 질 영역의 경우 범죄안전도와 육아휴직 지표 값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 영역은 한부모가구 저소득비율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는 범죄안전도와 한부모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률, 여성 관리자,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제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절 성평등 촉진 시책 관련 현행 법제 성격과 주요내용

1. 헌법

1) 현행헌법상 성평등 조항의 내용

현행헌법은 평등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법 앞의 평등과 차별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은 모든 생활영역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함으로써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뜻한다. 이러한 원칙은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에서의 평등을, 제34조 제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에서의 평등을,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가족생활에서의 평등을, 제36조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모성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생활영역별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¹⁾

2) 현행헌법상 성평등 조항의 성격과 한계

성평등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편견 제거나 남성우월적 문화나 의식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 등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이의 관철을 위해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같은 역차별적 방법이 동원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규정내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을 얼마든지 도출해 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의 문언적 표현들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만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한편 보호해야 할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성별분리역할 내지 성별 고정관념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성인지적 시각에서 성평등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일반적 평등권과는 따로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실현의무를 규정하여 성 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²⁾ 즉, 계속되는 적극적 조치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 조치의 틀을 헌법상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이한태, 고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9면.

2) 김선옥 외, 성 주류화의 기반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9면.

2. 여성발전기본법³⁾

1) 여성발전기본법의 연혁과 성격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9월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과 문민정부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 중 여성의 사회참여를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탄생 했다. 이 법은 내용상 여성발전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의 규정과 다양한 법률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그리하여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여 개별법을 제·개정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적극적 조치의 실시,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확대, 양성평등교육의 실시,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발전을 선도·촉진해 오고 있다.

2)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며, 실현을 위해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의 세부목적이다(제1조). 또한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이러한 법의 기본이념은 실질적 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행동강령의 기본이념과 일치시켜 표현한 것이다.

3) 이한태, 앞의 논문, 97-98면.

3) 적극적 조치의 실정법적 근거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표현을 통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실현조치라는 인식의 부재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자 2002년 12월 개정 시,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4)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 법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7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이러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은 서로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제10조).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어야 하고(제11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5) 여성발전기본법상 여성정책 기본시책의 주요내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해 18개의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양성평등과 관련된 주요한 것들로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확대(제15조),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제16조),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과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제17조), 가정(제19조)·학교(제20조)·평생교육(제21조)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의 실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의 정보화 능력향상(제21조의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을 통한 양성평등교육(제21조의3),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제24조) 및 가사노동가치의 정당한 평가(제26조), 여성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의 참여확대와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제27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과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제28조),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28조의2) 등이 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성격과 제정이유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 평등 관점으로 국가정책을 분석 평가 하도록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나,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성인지예산제도(국가성인지예산제도 근거 2006년 국가재정법),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지방성인지예산제도 근거 2011년 지방재정법)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하고, 분석평가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등을 포함한다(제5조 및 제6조).

3) 평가결과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

4)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및 제14조).

5) 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고,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4.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 성인지예산

1) 성인지예산의 성격과 중요성

성인지 예산은 국가예산의 편성·시행·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성별화된 속성을 분석하여 자원배분의 불평등한 효과를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성 주류화 도구이다. 궁극적으로는 세출과 세입을 분석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산구조를 재구조화하게 되므로 모든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예산의 배분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사회적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사회의 가치있는 자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성인지 예산을 실행함으로써 다른 성주류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성평등을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공공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성인지 예산을 공공정책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가져오는 전략으로 여기고 있다.⁴⁾

4) 김선욱 외, 앞의 책, 37-39면.

2) 성인지예산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에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작성

동법은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34조).

또한 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57조, 제58조, 제61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의 개요,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성평등 기대효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는 국회제출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된다. 또한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 감사원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정부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8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및 그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하며(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방재정법상 성인지예산의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에도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어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조의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의2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에서는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5. 통계법·여성발전기본법 : 성인지통계

1)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과 성격

정책수립에 있어서 관련 통계는 중요한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바,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등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 정책이 주요 국가정책으로 확대·추진됨에 따라 성인지통계의 생산·보급·관리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성별통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성평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은 정책의 필요성도 파악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다.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성별분리통계가 있어야 한다. 즉, 성인지 통계는 성불평등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성인지 통계를 기초로 한 여타의 성인지 정책들의 추진은 성평등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발전기본법의 성인지통계규정의 내용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성인지 통계를 처음으로 규정한 법으로 성인지 통계정책의 근거가 되어 왔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성인지 통계는 여성정책부서의 주요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주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였을뿐 모든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의 부서가 되지 못하는 못한다.

3) 통계법에서의 성인지통계규정의 내용

통계법 제18조 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통계법 내용의 의미는 통계정책에서의 성 주류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국가통계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조사대상이 개인단위이지만 성별로 조사되지 않거나 분석 발표가 되지 않는 사례를 찾아내어 개선할 경우 효율적으로 성인지 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0년도에 개정된 통계법에는 2007년 신설되었던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조항에 성별 분리통계 작성의무를 추가하여 통계생산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강화하였다.

4) 여성발전기본법과 통계법에서의 성인지통계규정의 비교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타 부처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는 반면, 통계법은 통계주무부처인 통계청이 관장하는 법으로서 다른 부처의 통계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행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통계법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은 구체적으로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조직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통계법은 구체적으로 행위자를 명시함에 따라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통계를 작성한다 함은 통계를 새로 생산하는 것에서 기존의 통계를 재분석하는 것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상의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통계생산의 어느 단계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반면 통계법에서는 새로운 통계의 작성시 조사사항에 성별구분을 넣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⁵⁾

5) 김선옥 외, 앞의 책, 56면.

제3절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1.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정

1)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

(1) 제정개요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조례 제3063호로 200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여성관련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 동 조례의 주요골자

- ①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②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통계자료 작성시 남녀구분을 의무화 함(안 제5조 및 제7조).
- ③매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백서를 발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 ④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평가를 실시 부서평가등에 반영토록 하고, 여성주간행사를 지원하거나 개최토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⑤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노력토록 의무화하고, 직원의 공개채용시 채용목표제를 이행토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⑥남녀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공무원 재교육을 장려하며, 공무원교육원에 여성공무원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토록 함(안 제14조).
- ⑦성차별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 및 소속·투자기관장이 성차별의 금지·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성차별 접수창구로 평등소리방을 설치토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⑧여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또는 공중시설 설치시 여성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시설하도록 함(안 제18조)
- ⑨영유아보육을 위해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수유를 이유로 여성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며,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내지 제21조).
- ⑩여성단체 협력·지원, 여성 자원봉사활동 및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 ⑪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여성발전연구위원회를 여성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내지 제37조).
- ⑫ 여성발전기금과 모·부자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 내지 제50조).
- ⑬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및 대전광역시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 함(부칙 제2조).

2)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과정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1년 제정된 후 2009년 2월까지 5차의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정일	주요내용
1차	2002-1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효율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상향조정 ·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함(안 제29조).
2차	2004-1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가정의 보호·지원에 관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 · 모·부자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모자복지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에서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한 자중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으로 변경(안 제2조의 제3호).
3차	2007-0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발전연구원 경쟁력 강화방안에 의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안 제28조). 나. 대전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부 신설과 관련 전임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안 제41조제3항). 라. 대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42조 및 제44조).

4차	2008-0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양성평등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3조). 나.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명시(안 제9조). 다. 성매매피해자와 탈성매매자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7조). 라.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하여 명시(제29조). 마. 여성정책위원회의 회의의 임의성을 정기적 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를 년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2조). 바.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5차	2009-0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대상자를 피해아동과 피해여성으로 확대함(안 제50조 등). 나. 지역연대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을 정비함(안 제51조 및 제52조).

2.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

현행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6개의 장에 5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여성정책, 제3장은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복지기금, 제5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제6장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근거 법령, 시의 책무, 시민의 책무, 시장의 적극적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의 책무는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여성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조치로서 대전광역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정책의 장에서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정보제공, 주요정책의 평가, 여성주간 행사, 여성정책추진협의회 구성,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양성평등의식 제고, 복지증진,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영유아보육, 모성의 보호,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의견 수렴 창구 운영,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대전여성백서를 발간 배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여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기관자체실정에 맞는 여성채용목표제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 있어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

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 소속기관장등 및 관내 모든 직장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소속기관장등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 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하기 위하여 평등소리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평등소리방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등 어려운 여성과 여성노인, 농촌여성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고, 성매매피해자와 탈성매매자의 상담 및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들의 자활 및 직업알선과 법적, 교육적, 의료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 또는 공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여성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 촉진 및 영유아보호 와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직장보육 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적이 큰 자에게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여성정책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등의 직무, 소위원회, 의견 청취, 운영세칙 등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복지증진·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여성기관·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언론인,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그 밖의 여성·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복지기금의 장에서는 여성발전·복지기금,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성,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기금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교육비·직업훈련 및 생계비·질병치료비·주택임대지원금, 한부모가족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에 사용된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 및 한부모가족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여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장은 기금을 지원 결정된 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장에서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장등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

아동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아동과 피해여성(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둔다.

지역연대는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공무원, 여성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여성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지역연대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연대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지역연대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연대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연대에서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지역연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평등 확산을 위한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제

제1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제2절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 3 장 성평등 확산을 위한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과제

제1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의 쟁점과 시사점⁶⁾

본 절에서는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구성과 주요 내용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법적 근거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성발전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남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접근으로, 더 나아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이런 환경을 「여성발전기본법」은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평등지수를 살펴 보면 여성의 기회 및 성취수준을 측정하는 남녀평등지수(GDI, 2009년 157개국 중 25위), 성 불평등지수(GII, 2010년 138개국 중 20위)의 경우 한국의 순위가 상위권이지만, 여성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정도를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 2009년 93개국 중 61위)와 남녀격차를 측정하는 성격차지수(GGI, 2010년 115개국 중 104위)의 경우에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김태홍 외, 2010).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누락된 정책 내용을

6) 관련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안 연구」 내용을 참조하였음

보완하며,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하게 기본법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정부입법인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신낙균 위원이 대표발의 한 「성평등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개정 법률안, 즉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현행법은 6개의 장과 42개 조항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입법안 「여성정책기본법안」은 6개의 장과 52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낙균 의원 대표발의안인 「성평등기본법안」은 7개의 장, 5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구성에서 특징은 두 법안 모두 ‘정책의 추진체계’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여성정책기본법안」의 경우 ‘여성참여의 확대’를 별도의 절로 구성하고 있으며, 「성평등기본법안」의 경우 ‘성차별 금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제도와 관련하여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별도의 절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3-1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비교

현행법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민의 책무)	제4조(국민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적극적 조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2장 여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여성정책의 수립	제1절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의 수립 등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의 협조)	제9조(국가성평등지수의 작 성과 발표)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제10조(여성 관련 실태조사)	제10조(업무의 협조)
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성별 통계의 작성·보 급)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제2절 여성정책 추진체계	제2절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2조(여성정책책임관의 지 정 등)	제12조(여성지위위원회)	제11조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 사 등)	제13조(여성지위실무위원회)	제12조 (성평등정책 실무위원회)
제14조(여성주간)	제14조(심의 결과의 통보 및 반영)	제1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여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제14조(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지정 등)
		제15조(성평등주간)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3장 여성정책의 추진	제3장 성차별의 금지 및 성 평등 촉진 등
	제1절 여성 참여의 확대	제1절 성차별 금지 등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 치 참여)	제16조(적극적 조치)	제16조(성차별 금지)
제16조(공직 참여)	제17조(정치 참여)	제17조(성희롱 금지)
제17조(고용평등)	제18조(공직 참여)	제18조(진정 등)
제17조의2	제19조(공공기관 임원 참여)	제19조(성차별시정소위원회)

(성희롱의 방지 등)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제20조(위원회 참여)	제20조(준용규정)
제19조(가정교육)	제21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1조(권고의 통보)
제20조(학교교육)	제22조(일·가정 조화 지원)	제22조(시정명령)
제21조(평생교육)		제23조(시정명령의 확정)
제21조의2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4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의 설립 등)		제25조(소송지원)
제22조(여성복지 증진)	제2절 성평등 촉진 및 성평 등 문화 확산	제2절 성평등 촉진 시책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의 병행)	제23조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제26조(적극적 조치)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제24조(법령·정책에 대한 성 인지 분석·평가)	제27조(동등한 정치 참여 등)
제25조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제25조(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제28조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제26조(가사노동 가치의 평 가)	제26조(성인지 교육)	제29조(가족·사회생활 양립 지원) 국
제27조(여성 국제협력)	제27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30조(평등한 가족생활)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제28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제31조(모성의 권리 보장)
제28조의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29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제32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30조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제33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제31조(여성주간)	제34조(가정폭력, 성폭력, 성 매매의 방지 등)
	제32조(여성친화도시)	제35조(성희롱의 방지 등)
	제33조(국제협력)	제36조(취약계층 여성 권익 보호 등)
	제34조(정책분석·평가기 관 설치 등)	제37조(성평등 관련 국제조 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제38조(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
	제3절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제3절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5조(성희롱의 방지 등)	제39조(성 주류화 조치)
	제36조(여성폭력의 방지 등)	제40조(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제37조(모성 보호의 강화)	제41조(성 인지 예산)
	제38조(여성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제42조(성 인지 통계 등)
	제39조(법률구조 지원)	제43조(성 인지 교육)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4장 성평등 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제40조(기금의 설치 등)	제44조(기금의 설치 등)
제30조(기금의 용도)	제41조(기금의 용도)	제45조(기금의 용도)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46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5장 여성정책 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제5장 성평등 관련 시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43조(한국여성평등진흥원의 설립 등)	제47조(성평등 관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44조(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48조(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5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제33조의3(청문)	제46조(지정취소 등)	제50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34조 삭제	제47조(청문)	제51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48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49조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0조(여성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제52조(국회에의 보고 등)
제36조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51조(성차별시정소위원회)	제53조(성평등 관련 조사와 정보화)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제55조(과태료)
부칙	부칙	부칙

이하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차이점을 개정이유, 법률제명, 정의규정,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 주요시책, 성 주류화 조치, 기금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이유 :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 또는 ‘우리사회 성평등 향상’ 을 위한 기본법

‘여성정책기본법안’ 이 밝히는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성인지(性認知) 및 평등가치의 중시 등 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여성정책기본법’ 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여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법령·정책 등에 대하여 성인지 분석·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

「성평등기본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강력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8)

7)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9854, 제출연월일 : 2010.11.9, 제출자 : 정부, p.1.

< 표 3-2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개정사유 비교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①국내외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	①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
②여성정책 추진체계 정비	②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③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③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④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④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⑤성차별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복원
	⑥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제시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은 모두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며, 성 주류화 조치 등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개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점도 가진다.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여성 ‘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여성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성평등기본법안」은 본 법률안이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성평등 향상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8652, 발의연월일 : 2010.6.23, 발의자 신낙균 외 42명, p.3.

2. 법률제명 : ‘여성발전’ 에서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 으로

법률제명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은 모두 현행법의 ‘발전론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도 있는데 「여성정책기본법안」의 경우 여성정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지위변화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성 주류화 등에 대한 이해와 수준도 높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의 범위나 추진부서 등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이다(박선영 외, 2009). 하지만 ‘여성정책’에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법으로서의 목표와 지향이 잘 드러나지 않고, 단지 여성가족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서의 위치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역차별 논의의 심리적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으로 인해 성별격차를 좁히고 성평등을 구현한다는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성평등기본법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성평등’, ‘성 주류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여성대상 정책을 넘어 남녀가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는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가치지향적인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정하면 여성의 역량강화, 취약계층여성이나 지역여성단체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3. 정의규정

1) 성평등 : ‘기회의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은 ‘성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 표 3-3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 정의규정의 비교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성평등을 “평등한 기회의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평등기본법안」은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회의 평등’보다 확장된 ‘결과의 평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평등기본법안」의 성평등 개념은 OECD의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에 가까움. OECD에서 ‘성평등이란 사회적 가치가 내포된 재화와 기회, 자원, 보상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은 이미 불평등하기 때문에 양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성평등의 전략으로 부족하다. 불평등한 상황에서의 동등한 대우는 차별을 지속시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차별이 강화 및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관행이 바뀌어야 하고 여성이 여성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낼 필요가 있음’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손문금 외, 2011).

9) OECD,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oecd.org/dataoecd/56/46/28313843.pdf> p.13.

2) 성희롱 : 주체와 범위의 포괄성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은 ‘성희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표 3-4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성희롱 정의규정의 비교

현행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p>‘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p> <p>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p> <p>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말·행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p>	<p>“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p> <p>제17조(성희롱 금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또는 고객 등은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성희롱의 ‘주체’와 관련하여 「여성정책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성평등기본법안」은 제17조에서 ‘고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의 ‘범위’를 「여성정책기본법안」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평등기본법안」은 ‘고용상의 불이익’뿐 아니라 일반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기본법안」이 보다 성희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차별과 성인지에 대한 정의규정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성인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의 용어를 바로 사용하는 반면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는 ‘성인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로 인하여 사라진 성차별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견 현재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담은 것은 「정부조직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업무와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 검토의견, 2011).

< 표 3-5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성차별과 성인지에 대한 정의규정

여성정책기본법안 ‘성인지’	성평등기본법안 ‘성차별’
<p>“성인지”(性認知)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p>

4. 추진체계

1) 심의조정기구 : 부처 간 조정기능과 실무기관의 지원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모두 현행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여성지위위원회’ 혹은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표 3-6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심의조정기구 비교

구분	현행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지위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기능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여성정책 심의·조정	조정기능 삭제	성평등정책 심의·조정
구성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국무총리가 의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의장)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국무총리가 의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의장
실무 기관	여성정책실무회의	여성지위실무위원회	성평등정책실무위원회 상설전문위원회

자료 : 임중호(2011)에서 재인용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여성지위위원회에 조정기능을 배제한 심의기능만 부여하고 있어 현행법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고, 연간 1~2회 열리는 총리급 위원회 회의를 고려할 때 형식상 회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추진체계가 될 수 있는지의 문이다.

「성평등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전 부처의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조정·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요 중앙부처로 ‘기획재정부 장관,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하고 있다. 「성평등기본법안」의 추진체계인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는 전 부처의 성평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등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들을 보다 강력히 견인해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리급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 내에 상설조직으로 ‘전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여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이행의 점검과 평가, 그 밖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정하고 있다. 또한 실무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를 두고 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같은 실무기관의 뒷받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책임관 지정 : 기초지방정부로의 확대 여부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에서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평등기본법안」은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방정부 기관에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에 포함된 법안 중 추진주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3-7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 비교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재원마련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재원마련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제23조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지역의 성평등 정도 지수화를 위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	제9조 국가 성평등지수의 작성과 발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 작성·발표
제11조 성별 통계의 작성·보급 성별통계의 작성, 보급, 활용	제42조 성인지 통계 등 성인지 통계의 산출, 보급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15조 여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제14조 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지정 등
제16조 적극적 조치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적극적 조치 실시	제26조 적극적 조치 특정 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적극적 조치 실시
제17-20조 정치, 공직, 공공기관 임원, 위원회 등에 성별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시책마련	제27조 동등한 정치활동 참여
제21-22조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일·가정조화 지원	제28-29조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및 가족·사회생활양립지원
제29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마련	제30조 평등한 가족생활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마련
제37조 모성 보호의 강화 모성관련비용의 사회적 부담 증가를 위한 노력	제31조 모성의 권리보장 모성관련비용의 사회적 부담 증가를 위한 노력
제27조 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실시	제32조 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실시
제28조 성평등 문화의 조성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발굴·추진	제33조 성평등 문화의 조성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사업 발굴·추진
제36조 여성폭력의 방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한 시책마련	제34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보호시책 마련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권통합교육 실시
제35조 성희롱의 방지 성희롱피해자 보호 시책 마련	제35조 성희롱 방지 성희롱 피해자 보호 시책 마련
제38조 여성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여성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시책마련	제36조 취약계층 여성 권익보호 한부모, 장애인, 비정규직,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여성 권익보호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33조 국제협력 국제회의 여성참여 확대, 개발도상국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교류활동 지원, 국내외 한민족 여성 간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제37조 성평등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등 국제조약 이행을 위한 시책 강구
제5조 2항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추진과정 여성의 참여와 역할 증대	제38조 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 증진 평화·통일과정의 여성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시책마련
제24-26조 법령·정책·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실시	제39-43조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제45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경비보조 제46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7조 성평등 관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성평등 관련 시설 및 기관 운영, 예산지원 제50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8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경비 보조	제51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성평등과 관련된 학계 및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에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에 대해 두 법안은 규정의 내용상 우선적 고려사항에 대한 조문의 배열과 구체성을 명시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 중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사이에 가지고 있는 차이점과 이슈가 될 수 있는 점만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는 여성의 복지수요를 단지 경제적 취약 상태 뿐 아니라 지역, 나이 등의 차이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복지대상의 범주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관점이 정부의 보호 측면에 머물러 있어, 정책 대상자들을 수동적 수혜자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이주여성이 아닌 ‘결혼’ 이민여성으로 정책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한부

모, 장애인, 비정규직,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아동·청소년·노인 등의 신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복지보다는 여성의 권익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보육 및 가족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모두 가족 내의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시책마련(신규)을 포함하고, 보육과 관련하여 아동보육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지 않고 보육을 “모성”의 권리로 접근하며 (‘모성 보호’ 강조) 이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모성권의 경우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공보육서비스, 자녀양육수당 등의 제공을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 구조가 돌봄의 책임을 면제받는 남성노동자를 표준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모성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이재인, 2006). 따라서 모성권에 대한 근거 규정보다는 돌봄노동을 의무가 아닌 권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가족을 양립시킬 수 있는 총체적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모성권과 부성권이 함께 보장되는 방향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기본법안」의 거버넌스 관련 내용은 국제협력과 여성단체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평등기본법안」 역시 성평등 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등(제37조)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제51조)으로 민과 관의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거버넌스를 위해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협력’을 명시하여 민과 관의 동등한 지위에서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주요 시책

주요시책 내용 중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이 차이를 가지는 내용은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근거조항의 유무이다. 「여성정책기본법안」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 반면 「성평등기본법안」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여성정책기

본법안」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규정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¹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 도시 건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도시공간 및 시설에서 여성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 많은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표 3-8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여성친화도시 조항 비교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p>제32조(여성친화도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없 음</p>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은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교화, 모든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10)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개념규정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임.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는 단지 도시공간 및 시설에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여성을 지역 발전의 주체로 위치시키고 일상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 바라볼 수도 있음(여성가족부(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

**< 표 3-9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 조항 비교**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제44조(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 음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 모두 현재 여성정책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사항은 ‘여성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이다.

7. 성 주류화 조치

「여성정책기본법안」에는 성 주류화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는 반면,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성주류화 관련 절’을 신설하여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주류화’를 위한 활동을 시행할 것을 명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의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많은 상황에서 ‘성 주류화’라는 개념을 법률에 제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소관정책에서 제·개정 법령 및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하고 ‘성인지예산’ 실행, 인적통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인지교육 실행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기본법안」에서는 예산과정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과정’에서도 예산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성인지예산 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연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41조 ③항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통계에 대한 규정에서도 「성평등기본법안」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시행에 필요한 성별분리통계 및 자료를 산출·제공하도록 하면서 정책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성인지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표 3-10 > 「여성정책기본법안」과 「성평등기본법안」의 성 주류화 관련 조항 비교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p>제39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과 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性主流化)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성평등이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p>
<p>제24조(법령·정책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 제정·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0조(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시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5조(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평가) ① 국가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한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1조(성 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정 및 성과관리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 인지 예산(性 認 知 豫 算)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성별 통계의 작성·보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의 지원 및 성인지 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성별 통계를 작성·보급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제42조(성 인지 통계 등) ①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 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 시행에 필요한 성별분리통계 및 자료를 산출·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인적 통계의 경우 성별분리통계 및 자료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6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p>	<p>제43조(성 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 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 인지 교육”(性 認 知 教 育)이라 한다)</p>

여성정책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p>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을 공무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육을 관련 제48조에 따른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8. 기금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여성발전기금’의 현행 기금명을 유지하고,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지원, 여성단체 사업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성평등 실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논쟁점은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이 안정적으로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기본법안」은 성평등 기금으로 기금명을 변경하고,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본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본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단체 사업 지원, 성차별·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 지원, 국제협력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과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2절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조례 명 및 총칙

1) 조례명

(1) 대전광역시 및 타 시·도 조례명 검토

16개 시도의 조례 명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성평등기본조례」이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여성발전조례」,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정책기본조례」이고, 그 외 광역 지방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명칭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중심의 정책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목표로서 제명에서 성평등 지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아직은 많은 시도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명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11 〉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 명칭 현황

번호	시도명	조례명	시행규칙 여부
1	강원도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시행규칙
2	경기도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3	경상남도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4	경상북도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13	전라북도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15	충청남도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16	충청북도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2) 시사점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의 공동참여·공동책임의 구현을 기초로 남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기 위해 젠더중심(GAD, Gender-and-Development)의 접근으로 변화하고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하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아휴직제 도입, 고용 및 정치/정책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사회적, 정치적 구조로 바라볼 수 있는 성인지 관점(gender-perspective)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에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을 두고 여성정책을 특정분야 위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모든 분야의 정책에 성인지(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정부정책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투영되고 있으나 여성정책 시행의 규정이 되고 있는 기본법이나 조례는 아직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책이념과 배치되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안정성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발전기본조례’라는 조례명은 국내외 여성정책이 여성중심 또는 여성발전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젠더중심의 정책접근으로, 더 나아가 성 주류화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정책의 목적이 성평등 촉

진이나 성평등한 환경조성이 아닌 여성발전 또는 여성의 지위향상으로만 협소하게 이해되거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조례명은 여성정책의 목적이 성평등 촉진, 성평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명에 ‘성평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총칙

(1) 현황과 문제점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총칙은 목적(제1조), 시의 책무(제3조), 시민의 책무(제4조), 적극적 조치(제5조)로 되어 있다.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시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여성과 관련 하여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여성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적 조치)	대전광역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 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문제점

목적 규정으로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실제 목적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시의책무 규정에서는 시의 책무로서 제시된 조문이 강제규정의 의미가 약하다. 또한 정책추진을 위해 교육·홍보 이외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이 없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목적’ 관련 조문에서 조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도로는 울산광역시와 경기도를 살펴볼 수 있다.

· 울산광역시(제1조)	“이 조례는.....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제1조)	“이 조례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시·도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취할 것을 책무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도의 책무로 교육 및 홍보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예로는 대전광역시(제3조)와 제주도(제3조)가 있으며, “시·도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다.

(3) 시사점

현행 목적 규정에 의하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적 규정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향점을 분명¹¹⁾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목적규정에

11)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

담을 내용은 양성의 실질적 평등과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의 책무(제3조) 내용도 현행 소극적 책무에서 벗어나 여성정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실시하고, 필요한 체제 정비와 재정 마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추진에 관한 정보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여성정책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시민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책무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시의 책무에 관련된 조항은 강제규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정책추진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 제시를 통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5조의 ‘적극적 조치’는 누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총칙보다는 성평등 시책의 하나로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들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이나 조례들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체계와 구성

(1) 현황과 문제점

현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복지기금, 제5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제2장 ‘여성정책’에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제7조와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9조 2항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 등이 여성정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16개 시도 법률체계는 대부분 총칙과 여성정책(여성정책기본시책, 성평등 정책), 여성정책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여성상이나 사랑방 운영, 여성·가족친화도시 기반시설 조성,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관련된 내용이 한 장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다.

16개 시도 모두 여성정책 관련 장에 ‘주요정책추진실적의 평가’,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근거규정과 정책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표 3-12 > 16개 시·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체계와 구성 현황

번호	시도명	체계와 구성
1	강원도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시행계획 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제7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8장 여성사랑방, 제9장 보칙
2	경기도	제1장 총칙, 제2장 성평등 정책,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 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경기도여성상, 제7장 경기도여성인력개발 협의회, 제8장 보칙
3	경상남도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시행계획 등, 제3장 여성정책 기본시책, 제4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경상남도 여성상
4	경상북도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정책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제7장 경상북도여성상, 제8장 보칙
5	광주광역시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가족친화도시 기반시설 조성,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7장 보칙
6	대구광역시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대구광역시 목련상, 제6장 보칙
7	대전광역시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복지기금, 제5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제6장 보칙
8	부산광역시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발전종합계획 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정책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6장 부산여성상
9	서울특별시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보칙
10	울산광역시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주간, 제6장 여성관련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 제7장 보칙
11	인천광역시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6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7장 보칙
12	전라남도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 제3장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 제4장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5장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제7장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제8장 전남여성플라자 설치·운영
13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4장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제5장 보칙
14	제주특별자치도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4장 여성특별위원회,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15	충청남도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복지기금, 제5장 보칙
16	충청북도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제6장 보칙

(3) 시사점

2012년 3월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정부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는 바 성 주류화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별도의 장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여성정책

1) 여성경제활동

(1) 현황과 문제점

① 관련조항

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중 다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4항, 제20조(모성의 보호), 제21조(여성경제활동지원) 조문이 있다.

일-가정양립 관련하여서는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④ 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모성의 보호)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경제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제점

현행 대전시 여성경제활동 분야의 조례내용이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어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시행의 근거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모든 경제활동에의 동등 참여를 위한 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인적자원 개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등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타 시·도의 여성경제활동지원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부산시의 경우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관련 조항을 명시화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에는 여성경제활동관련 조항의 내용이 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등), 제16조(경제활동지원 및 여건조성), 제18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모성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시도로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이 있다.

「부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육성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경제활동 지원 및 여건조성) ①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매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시사점

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

‘일·가정양립’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고, ‘성평등 및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의 지속적 고용 보장 지원’ 등의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② 경제활동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필요

여성기업인, 취업여성 및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③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 등의 규정 필요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내용을 조례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④ 관련법을 참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바, 대전시의 경우에도 이를 참조하여 여성경제활동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소외여성지원

(1) 현황과 문제점

① 관련조항

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중 나목 “여성의 복지증진”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7조(복지증진) 규정이 있

다.

제17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등 어려운 여성과 여성노인, 농촌여성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문제점

소외여성의 범주에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모자가정의 여성,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상계층의 등장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 새터민 여성, 비정규직여성, 빈곤층여성 등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가출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점이 선도 및 요보호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제17조(복지증진)의 ② “가출여성”, “요보호여성”, “선도” 등과 같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함. 또한 “모자가정”은 “한부모가족”으로 용어변경이 필요하며,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을 별도로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혼모,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한부모, 이주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법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 계층의 여성에 대한 지원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 등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역시 상담 및 보호를 넘어서지 못하여 소외계층여성에 대한 관점이 정부의 보호 측면에 머물러 있고, 정책 대상자들을 수동적 수혜자로 위치시키고 있다.

(2) 타 시·도 및 관련 법안 검토

① 타 시·도 관련 조항의 특징

주로 소외여성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조문에서 다루고 있으며, 소외여성의 범주를 저소득 모·부자 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의 단위에서 접근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증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과 관련한 조문을 두어 소수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다.¹²⁾

(3) 시사점

‘요보호’, ‘모자가정’, ‘선도’ 등과 같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정부의 가부장적 보호가 아닌 기본 권익 확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상자 범위의 확대에 따라 관련 조문이 이러한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여성, 빈곤여성 등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주요 취약계층 여성으로 조문에 지원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접근은 예방과 교육·직업훈련·재활 지원과 그들의 모성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보장 등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외계층여성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복지보다는 여성의 권익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2) 제40조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 ①시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육 및 가족

(1) 현황과 문제점

① 관련 조항

보육관련 조문은 제19조이며, 가족관련 조문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육관련 규정내용은 보육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19조 (영유아보육 등)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 촉진 및 영유아보호와 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문제점

현재 가족 지원을 위한 조문은 제17조(복지증진)에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이 있을 뿐 여타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과 성평등한 가족문화확산을 위한 시책 규정이 없다. 또한 여성정책에서 ‘보육’ 문제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남녀 간의 공동분담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나 현재 조문의 내용은 단지 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강원도의 조례에서는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 간 평등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가족생활의 평등성은 가족 단위 뿐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광주광역시의 경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지원”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도명	체계와 구성
인천광역시	제20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강원도	제17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한부모 가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제28조(가족 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가족 구성원과 가족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 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3) 시사점

가족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과 가족 내 성평등한 역할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형태 및 가족관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보육은 보육시설에 관한 설치조항 등은 「대전광역시보육조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여성인권

(1) 현황과 문제점

① 관련 조항

여성인권 관련 조문은 제15조의 ①, ②항, 제16조 ①, ②항, 제17조 ④, ⑤항, 제5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등의 규정이다. 주요내용은 성차별 및 성희롱 발생예방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성폭력 및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지원내용에 있어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의 상담 및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권 확보방안에 대한 규정으로 ‘평등 소리방’의 설치·운영과 ‘아동·여성보호 연대’ 관련 조문을 포함하고 있어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15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시장, 소속기관장등 및 관내 모든 직장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소속기관장등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평등소리방 운영등)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를 접수하기 위하여 평등소리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평등소리방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복지증진) ④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고, 성매매피해자와 탈성매매자의 상담 및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들의 자활 및 직업알선과 법적, 교육적, 의료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

제50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아동과 피해여성(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둔다.

제51조(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제52조(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공무원
 2. 여성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여성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4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지역연대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위원은 지역연대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지역연대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지역연대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연대에서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지역연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위원장등의 직무등) 위원장등의 직무, 의견청취, 운영세칙, 간사 등은 제31조, 제35조, 제37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지역연대”로 본다.

② 문제점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시책은 복지의 관점이 아닌 기본권 혹은 인권침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환경 변화는 여성인권 및 권익 침해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시책강구-피해자에 대한 의료·정신적 치료 및 주거지원-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동의 내용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아동과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역 안에서 아동과 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① 타 시·도 관련 조문검토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인권 확보방안의 범주로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성희롱·성차별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 마련의 의지와 동시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 ‘여성 사랑방’ 설치(시행규칙 제13조), ‘전문상담원’ (시행규칙 제14조)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도명	체계와 구성
전라북도	제12조(성·가정폭력 및 성매매·성희롱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③ 도지사는 기타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 발생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한다.

강원도	<p>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등) ① 도지사 및 사업주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남녀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해야 한다.</p> <p>② 도지사 및 사업주는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p> <p>제12조(성폭력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자립지원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성매매 발생예방과 그 피해 여성의 선도·보호 지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직업훈련 등 자활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p>
-----	--

(3) 시사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와 관련하여, 사후적 규정 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차원의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동은 향후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거버넌스

(1) 현황과 문제점

관련조항은 제12조(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제22조(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제24조(국제협력 지원), 제25조(의견 수렴 창구 운영), 제26조(유공자 포상), 제60조(사무의 위탁) 등이 있다.

제12조(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 수렴 창구 운영) 시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적이 큰 자에게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6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방법·절차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의 요구, 필요, 경험 등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정에서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단체역량강화, 제도와 정책에 민간영역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거버넌스 내용은 대부분 국제협력지원, 의견수렴창구 운영,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유공자포상, 사무의 위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시민참여 조항을 참조하여 의견수렴과 욕구조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시장은 시행계획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단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건의된 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여성정책수요 욕구조사결과 및 공청회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한다.

(3) 시사점

대전시 조례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수요 및 욕구조사 뿐 아니라 전문가 및 여성·시민단체에게 각 실국의 사업시행계획, 착수단계, 중간 및 결과보고단계에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반영결과를 보고·공개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6) 도시공간 및 시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도시공간 및 시설 관련 법조문은 없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16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만이 ‘여성·가족친화도시 기반시설 조성’의 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안전, 편리,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개선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시공간 및 시설 안에 공동체와 소통, 돌봄,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장 여성·가족 친화도시 기반시설 조성(신설 2011.4.1)

제24조 (도시 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제2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26조(주거 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27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개정방향

도시공간 및 시설에서 여성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공동체, 환경, 소통, 안전, 돌봄, 다양성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성 주류화 전략

1) 성 주류화 제도

(1) 현황과 문제점

관련조항은 제5조 (적극적 조치), 제7조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제9조 2항 (성별 영향평가), 제12조 (여성의 시정참여확대), 제13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제14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의 규정이 있다.

제5조(적극적 조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정책의 평가) 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 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여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기관자체실정에 맞는 여성채용목표제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 있어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문제점

정책에 성평등관점 통합을 위한 주요 실천도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 통계, 성인지교육 등의 방법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기본조례에는 성별분리 통계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교육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여성정책부서의 개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 평가기준, 결과활용, 성평등 책임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① 타 시·도 관련 법안의 특징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단순 평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정책이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성인지적 정책반영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 둘째, 성인지 예산 제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이며 구체적인 조문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반영해야한다’ 이다. 셋째, 성별분리 통계에 대한 규정은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데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인적통계에 대한 성별분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여론 조사 실시’,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도정에 반영’, ‘주민에게 여성관련 정보제공’ 등의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넷째, 충청북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 주류화 제도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반주민의 접근 가능성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행정의 제도운영 충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명	체계와 구성
부산광역시	<p>제9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p>
강원도	<p>제7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한다.</p> <p>②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반영해야 한다.</p> <p>제8조(통계의 성별 구분 표기 등) ① 도지사와 투자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여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경상북도	<p>제7조(예산정책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울산광역시	<p>제6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예산의 편성을 말한다)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위 정책이 양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시행과 성별영향평가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제39조(여성관련정보의 구축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관련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하는 정보에는 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p>

	<p>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여성정책 관련예산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의 여성정책 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및 소속직원의 직급별 성별 통계 12. 여성의 보직 실태 13. 성별분리통계 14. 기타 여성관련 통계
전라남도	제16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③ 도지사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도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사점

성 주류화 제도를 대전시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추진기반을 명시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을 위한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 실행 명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시행 명시,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의 근거규정 마련,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을 위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 명시,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자문 지원의 근거조항마련,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시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 주류화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통합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추진체계 : 여성정책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한 조항은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전체 조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7조(여성정책위원회), 제28조(기능), 제29조(구성 등), 제30조(임기),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2조(회의), 제33조(소위원회), 제34조(간사), 제35조(의견청취), 제37조(운영세칙)이다. 현행 ‘대전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여성기관·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추진 관련 주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여성정책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관·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3. 언론인
4.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5. 그 밖의 여성·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34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삭제 2007. 03. 16 조례 제3484호>

제3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타 시·도 관련 법안 검토

① 타 시·도 관련 규정의 특징

추진체계로 16개 시·도의 조례에서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여성위원회 관련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위원회의 명칭은 여성위원회(서울시), 여성발전위원회(경기도, 강원도, 광주시, 울산시, 인천시, 충남), 여성정책발전위원회(경남), 여성정책위원회(경북,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북, 충북), 여성정책심의위원회(전남), 여성특별위원회(제주도) 등 다양하다.

경기도의 경우 ‘여성발전위원회’와 ‘성평등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가 함께 제시되고 있어, 여성발전정책과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가 별도로

로 제시되어 있다. 즉 여성발전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여성정책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하기 위한 기구인 반면, 성평등정책조정회의는 실국장 중심으로 도의 성평등정책을 조정·심의·점검·평가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을 별도의 정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여성발전위원회와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성평등조례」에 ‘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성평등조례」

제4장 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

제23조(성평등정책책임관) 도지사는 행정(1)부지사를 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도의 실·과장을 성평등정책실무책임관(이하 “실무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24조(성평등정책책임관의 임무) ①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성평등 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한다.

③ 실무책임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관 사항의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
3. 소관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상황 정리보고
4.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 개선
5.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추진

제25조(성평등정책조정회의 및 성평등정책실무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책임관 밑에 경기도성평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13)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 특화 전략과 주류화 전략 두 가지(쌍둥이 전략, twin-track approach)가 모두 필요함. 여성특화전략은 여성들이 주류화 제도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연계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성 주류화의 첫 번째 단계도 여성의 대표성 강화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여성연대, 2010)

-
1. 성평등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성평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정책의 추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자체 점검·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조정회의 내에 경기도성평등정책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는 소관사항의 자체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상황 정리·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조정회의에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조정회의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실·국·원장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은 도의원 및 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 한다.

③ 조정회의의 위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의장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 위원은 실무책임관과 가족여성연구원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시사점

여성정책에 관한 각 실국과의 정책 조정·협의과정이 중요해지면서 추진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여성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넘어 실국 간 협력과 조정,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시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여성정책 업무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정과 협력기능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여성정책 연계성을 통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도 있다.

제 4 장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

제1절 조례의 명칭

제2절 총칙

제3절 여성정책

제4절 여성정책위원회

제5절 여성발전·복지기금

제6절 실효성 제고

제 4 장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

제1절 조례의 명칭

기존의 여성정책들은 사회적 역할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마이너리티(minority, 소수자집단)로서 여성의 특수한 현실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고용·교육 등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의로서 양성평등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의 여성중심접근은 남성중심으로 편중된 정치·경제·사회의 권력구조, 성별 차이를 서열화하는 남성중심의 기준과 전통적 성역할 분업관에 기초한 남녀(젠더)관계의 변화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여성정책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편견에서 오는 한계로 인해 남성들의 관심과 협력을 크게 얻지 못해낸 것도 사실이다.

이에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의 공동참여·공동책임의 구현을 기초로 남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기 위해 젠더중심(GAD, Gender-and-Development)의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하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아휴직제 도입, 고용 및 정치·정책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사회적, 정치적 구조로 바라볼 수 있는 성인지 관점(gender-perspective)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성 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성 주류화 전략의 확산은 성인지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모든 정책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여성정책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 위주로 전개되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⁴⁾

이렇듯 정부정책의 지향점이 성인지적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아직도 여성에 편중된 개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정책과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여성발전기본조례’라는 현재의 조례명은 여성정책이 여성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젠더중심 및 성 주류화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의 목적이 성평등이 아닌 여성만의 지위향상으로 편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조례명에서부터 그러한 오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성정책의 목적이 성평등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의 성(性)과 관련한 의식과 관습, 욕구와 태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조례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성과 여성 간 존재해 온 불평등한 인식, 관행과 제도를 평등하게 개선한 상태를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양성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삶과 가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라는 현재의 조례명에서 ‘여성’을 ‘성평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할 경우, 굳이 ‘발전’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그 자리를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메우기도 하지만, 조례와 같은 법규범은 정책을 실현하는 근거로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존재 자체에 정책의 구현이라는 의도가 함의되어 있는 바, 조례명에 정책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불필요한 단어의 반복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조례’의 명칭을 ‘대전광역시성평등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요청, 삶과 가치의 변화된 상황에 부합한다.

14) 서영주 외,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1, 61면.

제2절 총 칙

현행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1조 목적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만 하여 입법목적이 여성정책 추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목적규정에 담을 내용이 성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조례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과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나, 2008년 6월 20일에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현재 조례에는 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조례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과 성평등관련 각종 법령 등에 이 들 용어에 관한 정의들이 있으므로, 하위규범에서 재 정의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고, 필요 없는 반복에 불과하여 제외한다.

제3조 시의 책무에서는 여성정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실시하고, 필요한 체제의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마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4조 시민의 책무에 있어서는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완하고, 시민의 책무 관련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여 자세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제5조 적극적 조치는 법제정당시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어 그 중요성에 비추어 총칙 부분에다 규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누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총칙보다는 성평등 시책의 하나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 내용을 실효성있게 하기위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들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다양한 조례들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조례체계의 확립이 요구됨에 따라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여타의 성평등관련 조례가 성평등기본조례에 부합해야하는 것은 기본조례가 존재하는 당연하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조항은 제외한다.

제3절 여성정책

대전시여성발전조례 제2장의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정책에 대한 각개의 시책규정에는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제2장의 제목을 성평등기본조례라는 개정안의 명에 합당하게 ‘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고, 이를 재구조화함과 동시에 현행조례 제7조이하의 개별시책에 대한 재정비 및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시책에 대한 구체화는 조례자체가 갖는 ‘기본조례’로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성평등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보장(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 및 여성공무원의 시정 참여 확대 등)
 - ② 일-가정양립지원(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마련)
 - ③ 사회·문화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등 사회·문화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등)
 - ④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⑤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 ⑥ 취약여성(이주여성, 빈곤여성, 한부모가정, 장애여성, 여성노인, 비정규직 여성, 새터민 여성 등)의 건강과 복지향상
 - ⑦ 성별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⑧ 평등한 가족생활 및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⑨ 시정에의 시민참여와 국제협력 지원
 - ⑩ 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제·개정에 따른 성 주류화 조치로 인해 개정안에

① 시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수립·시행되고 평가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한 의무규정, ② 성별분리 통계(현행 조례에서는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에 대략적 근거가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정의 구체화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교육 규정과 성 주류화 조치간의 연계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에 없던 각종 제도들을 조례에 삽입함에 따라 조례의 체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성 주류화를 위한 근거규정과 정책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새로운 체계에 맞추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조항을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이라 명명하고 장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 대상 접근에서 젠더 관계 접근으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성평등 시책 강화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정책책임관을 중심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한 성평등 정책 수행 점검과 환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책임관 지정을 명시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정책 시행계획 과 이를 현실화 할 추진체계로서 여성위원회를 같은 장에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라는 명칭으로 묶어 일반론적 규정의 성격을 부여하고, 기타 성평등 촉진을 위한 개별시책과 성주류화 조치로 인해 새로 삽입되는 규정 등을 각각 별개의 장에서 다루어 각론적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평등 촉진을 위한 개별시책은 ‘성평등정책의 촉진 시책’이라 명명하고, 성주류화 조치로 인해 새로 삽입되는 규정 등은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이라 명명하여 각각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4절 여성정책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의 명칭은 개정 명칭안인 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조정 및 자문활동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조례 제29조(구성 등)에는 복지여성국장만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은 각실국의 분장업무를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각 실국의 협력과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의 협조가 관건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각 실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정할 수 있는 국장급이상 당연직위원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위원의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전광역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 주류화 조치 전반을 추진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책임관 지정에 대한 조항의 삽입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정책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책임관과 더불어 대전광역시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 명시하여 여기에 성평등 정책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현행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규정과 묶어서 같은 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5절 여성발전·복지기금

여성발전·복지기금의 경우 개정되는 조례명에 맞게 ‘성평등기금’과 같은 명

칭으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며, 만약 조례명을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는 입법목적에 따른다면 ‘성평등실현기금’ 과 같은 명칭으로 개정이 바람직하며, 현행 조례의 여성발전·복지기금관련 조항들이 여성을 중심으로하는 편향적 표현들로만 규정되었는 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성평등 촉진의 방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현들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제6절 실효성 제고

현행 조례가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준수규정 내지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의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사실 모든 규정들을 강행규정화 한다 하더라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이나 제재력이 없기 때문에 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화 되어있는 조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례의 규범력이 저하되어 자칫 조례전체가 사문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성평등정책의 추진 실적을 시민에게 공표하거나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 꾸준히 모니터링 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또한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장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개요

제1절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안) 전문

제2절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안) 조문 대비표

제 5 장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개요

제1절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지양하고, 성평등 실현의 중요성 인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

의 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시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4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정책

가. 성평등의 실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사.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지원

아. 기타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4.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5조 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4조 시행계획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성평등 실현 시책

제13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시 여성의 현실과 성평등 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1회 대전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5조(주요정책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부서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① 시장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년을 기념하고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관련 행사의 유치 및 시행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여성정책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8조(시정참여의 성평등)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성평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및 관리직 승진목표제)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 51조의2에 따른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직 등의 관리직에 여성 또는 남성이 일정비율이상일 수 있도록 관리직 승진목표제를 시행한다. 관리직 승진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평등 실천의식 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기업·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성평등 실천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실천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종사자, 시민사회 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은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평등소리방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지원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및 성평등 관점의 인권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4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각종 도시공간 및 시설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성평등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6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시민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
3.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9. 그 밖에 일과 가정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양육 등 모·부성권을 보호하고, 모·부성권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차별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기업운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임신·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가족행사 등에 있어서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맞벌이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여성단체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대전광역시성평등실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성평등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국제협력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국내외 평화문화정책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

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적이 큰 자에게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6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성인지 예산) ①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내지 제53조의 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시행에 필요한 성별분리 통계 및 자료를 산출·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성평등정책의 시행을 총괄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실·국장을 성평등정책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성평등 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점검·평가 한다.

③ 실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성평등정책 관련업무, 제3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37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및 제38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 관련 사업 또는 업무의 점검, 성평등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제도 개선, 그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성평등 정책연구) 시장은 성평등의 효과적 실현과 추진을 지원하며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출연연구기관내에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연구부서를 설치한다.

제41조(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① 시장은 여성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여성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42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성평등실현기금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5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집행은 전년도 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성평등·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된다.

제5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지원의 중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 결정된 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2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장등의 직무, 의견청취, 운영세칙 등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장 보칙

제53조(수당 등) 제8조, 제11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참고인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그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방법·절차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5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호보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와 대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안)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조례명	대진여성발전기본조례	대진성평등기본조례	
목적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진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대진광역시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현행 조례는 조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여 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규정함이 바람직하다.</p>
시의 책무	<p>제3조(시의 책무) ①대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②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시의 책무) ①대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p> <p>②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경제계획의 수립 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③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시의 정책에서 성평등실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개정안 제2항과 같은 책무를 부여한다.</p>
시민의 권리와	<p>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여성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발전을 위한</p>	<p>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p>	<p>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 조항에서 나아가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책무	정책의 수립·시행에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p>가진다.</p> <p>②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지양하고, 성평등 실현의 중요성 인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③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④모든 시민은 시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평등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보완하고, 시민의 책무 관련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함께 시민의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외와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다.
직극적 조치	<p>제5조(직극적 조치) 대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05. 조례 제3290호><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조로 이동</p>	-
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여성정책</p> <p>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p>가. 양성평등의 촉진<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p> <p>제4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대진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정책 <p>가. 성평등의 실현</p>	대진시여성발전조례 제2장의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정책에 대한 각개의 시책규정에는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제2장의 제목을 성평등기본조례라는 개정안의 명에 합당하게 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고, 이를 재구조화함과 동시에 현행조례 제7조이하의 개별시책에 대한 재정비 및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제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호></p> <p>나. 여성의 복지증진</p> <p>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p> <p>3. 시정 각 분야의 주요 여성정책</p> <p>4. 여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p> <p>②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p> <p>다. 여성인재자원개발 및 활용</p> <p>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p> <p>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p> <p>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p> <p>사.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지원</p> <p>아. 기타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p> <p>4.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p> <p>②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의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시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5조 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p>	<p>4항을 신설하였다.</p>
<p>설치 및 기능</p>	<p>제3장 여성위원회</p> <p>제27조(여성정책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본조전문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1. 여성발전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양성평등 촉진 등에 관한 사항</p> <p>3. 여성기관·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5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p> <p>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2. 제4조 시행계획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p> <p>3. 성평등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p>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p>	<p>여성정책위원회의 명칭은 개정 명칭인인 대전시성평등 기본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 및 조정 활동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체계의 방만함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27조와 제28조를 한 개의 조로 재구성 하였다.</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4.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29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142호></p> <p>③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3. 언론인 4. 여성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와 그 밖의 학문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5. 그 밖의 여성·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p>[본항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p> <p>③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석견과 경협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현행 조례 제29조(구성 등)에는 복지여성국장만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은 각실국의 분장 업무를 초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각 실국의 협력과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의 협조가 관건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각실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조정할 수 있는 국장급 이상 당연직위원이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위원의 정원을 늘렸다.</p> <p>또한 간사에 관한 규정을 현행 조례에서는 제3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간사도 위원회의 구성원이므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서 같이 규정함이 바람직하다.</p>
위원의 임기 및 해촉	<p>제3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p>	<p>위촉직위원의 임기관련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촉사유를 제2항에 삽입하였다.</p>
위원장	<p>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p>	<p>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p>	<p>-</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의 직무	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3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위원 회	제33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
위원회 간사	제34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된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제4항으로 이동	-
의견 청취	제3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운영 체제	제37조(운영체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체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직극적 조치	<p>제5조(직극적 조치) 대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05. 조례 제3290호><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제3장 성평등 실현 시책</p> <p>제13조(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를 말한다. 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직극적 조치는 법제정당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총칙 부분에도 규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누락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총칙보다는 성평등 실현 시책의 하나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 내용을 실효성있게 하기위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p>
정보 제공	<p>제8조(정보 제공) ①시장은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에게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대진여성백서를 발간 배포할 수 있다.</p>	<p>제14조(정보 제공) ①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에게 시 여성의 현실과 성평등 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1회 대진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p>	-
정책 평가	<p>제9조(주요정책의 평가)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②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제15조(주요정책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부서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p>현행 조례 제9조 제2항은 개정안 제36조로 이동하여 자세히 규정하였다.</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성평등 문화 조성	<p>제10조(여성주간 행사) 시장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성평등 문화의 조성) ①시장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고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관련 행사의 유치 및 시행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p>	-
여성 정책 추진 협의회	<p>제11조(여성정책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p>	<p>제17조(여성정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p>	-
시장참여 확대	<p>제12조(여성의 시장참여 확대) ①시장 및 소속기관장 등은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p>	<p>제18조(시장참여의 성평등) ①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성평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p>	<p>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여성의 시장참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여성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 구성시 성평등을 위해서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촉직 위원정수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정수가 제1항에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성평등 위원회에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보완하였다.</p>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p>제13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시장은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여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19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및 관리직 승진목표제) ①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직</p>	<p>서울시 공직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양성평등채용목표를 도입시행하여야 하며, 간부직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리직 승진목표제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 등에서 여성의 채용을 넘어 승진목표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시대</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성평등 의식 제고	<p>②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기관차 체질정에 맞는 여성채용목표제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p> <p>③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④시장 및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등의 관리직에 여성 또는 남성이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직 승진목표제를 시행한다. 관리직 승진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적 변화를 반영하여 남녀의 참여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 “참여촉진”을 여성이나 남성이 공직 등의 관리직에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직 승진목표제”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보완하였다.</p>
성평등 의식 제고	<p>제14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 있어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②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제20조(성평등 실천의식 제고) ①시장은 가정·학교·기업·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성평등 실천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③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실천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종사자, 시민사회 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성평등 실천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의식 등의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p>
성차별 및	<p>제15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시장, 소속기관장등 및 관내 모든 직장의 장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금지·</p>	<p>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p>	<p>한행 조래는 제15조 ‘성차별의 개선’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성희롱 금지	<p>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시장·소속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피호 이상 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6조(평등소리방 운영 등) ①시장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를 접수하기 위하여 평등소리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평등소리방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총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은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시장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평등소리방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④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⑥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성희롱의 소지와 빈번한 발생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를 명시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지위 및 업무와 관련된 근무행태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관련성있는 현행 조례 제15조와 제16조를 한 개의 조로 재구성하였다.</p>
여성의 복지 증진	<p>제17조(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등 어려운 여성과 여성노인, 농촌여성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22조(여성의 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지원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현행 조례 제17조의 내용 중 이질적인 분야를 돌로 나누어 각각 제22조와 제23조의 개별 조에서 규정하였다.</p>
		<p>제23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①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p>	<p>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 등의 책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④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고, 성매매피해자와 탈성매매자의 상담 및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들의 자활 및 직업알선과 법적, 교육적, 의료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및 성평등관점의 인권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p>	<p>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직업훈련·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원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p>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p>제18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③시장은 공공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여성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4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시장은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한해 조례 제18조 제3항을 별도의 조인 제25조에서 자세히 규정하였다.</p>
도시 공간 및 시설		<p>제25조(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각종 도시공간 및 시설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성평등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도시공간 및 시설 설치에 성인지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간 및 시설 등 조성·개선 시 특히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 성평 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p>
여성의 건강 증진		<p>제26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 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p>	<p>임신·출산과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의 증대성은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건강을 위한 지원정책마련을 위해 ‘여성의 건강증진’ 조항을 신설하였다.</p>
영유아 보육	<p>제19조(영유아보육 등) ①시장은 여성의 취업과 사회 참여 촉진 및 영유아보호와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p>	<p>삭제</p>	<p>한해 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이를 개정안 제27조로 대체하여 더 자세히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제19조의 내용을 한층 강화하였다.</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p>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각종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7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시민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각종보육시설의 확충노력 3.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9. 그 밖에 일과 가정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여성의 사회참여증가와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는 바,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규정내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이는 사회진반적인 운동차원에서 움직여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과 관련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보육’과 관련하여 기존의 보육시설 중심의 논의에서 나아가 남·성육아휴직제와 같은 남녀간 공동분담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p> <p>이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한다.</p>
모·부성의 권리보장	<p>제20조(모성의 보호)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8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양육 등 모·부성권을 보호하고, 모·부성권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보육의 주체가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 즉 부모의 권리로 모아 모성만의 보호가 아닌 모·부성의 권리보장으로 접근하였다.</p>
경제 활동 참여 지원	<p>제21조(여성경제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9조(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 ①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차별문제</p>	<p>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 요구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주로 기업 활동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에서 나아가 취업여성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여성의 취업 및 고용확대를 위</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기업운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 등 고용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임신·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⑥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한 방안마련을 통해 고용 진반에 걸친 성평등을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p>
평등한 가족 생활		<p>제30조(평등한 가족생활) ①시장은 「간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가족행사 등에 있어서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맞벌이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구성원 내의 성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회 속에서의 성평등 구현은 더욱 요원하므로, 개정안 제30조에서 가족 내 평등을 기본적으로 하여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시책마련을 신실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으로 맞벌이 부부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명시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p>
단체의 지원	<p>제22조(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p>	<p>제31조(여성단체 지원)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p>	<p>여성단체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자세히 규정하였다.</p>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있으며, 예산이나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대전광역시성평등실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성평등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성평등 관련성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성격을 명시하였다.
국제협력 지원	제24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국제협력 지원 등) ①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 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국내외 평화문화정책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계화, 국제회의의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외 평화문화정책과 통일추진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국제무대 및 평화정책,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국제·평화적 연대와 협력 및 통일을 위한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 삽입하였다.
시민 참여	제25조(의견 수렴 창구 운영) 시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시민참여) ①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실현, 성 주류화 실천 등을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정책에 여성의 참여가 긴요한 필수조건이므로 여성정책거버넌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시정의 수립, 집행 등에 여성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정책거버넌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및 현장에 밀접한 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요구, 필요, 경험 등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여성들의 의견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구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유공자 포상	제26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적이 큰 자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제35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적이 큰 자에게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p> <p>제36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의 도입을 규정하는 수준에 머무는 기존의 조례에서 나아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도 반영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의 제정에 따라 성주류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의 연계 등을 강조하고 성인지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성인지 예산		<p>제37조(성인지 예산) ①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내지 제53조의 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성인지 예산 시행 및 교육은 성평등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대상과 내용이 협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계조항을 신설해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성인지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	제38조(성인지 통계) ①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	시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수립·시행되고 평가됨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성평등 책임관 지정 등	<p>통계</p> <p>·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p>	<p>우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 보급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시행에 필요한 성별분리 통계 및 자료를 산출·제공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9조(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 ①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성평등정책의 시행을 총괄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실·국장을 성평등정책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한다.</p> <p>②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성평등 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점검·평가 한다.</p> <p>③실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성평등정책 관련업무, 제3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37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및 제38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 관련 사업 또는 업무의 점검, 성평등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제도 개선, 그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④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한 의무규정으로서의 성인지 통계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인지 통계 조항을 확장시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규정 등의 성 주류화 조치 간의 연계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성 주류화 실천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였다.</p> <p>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은 신설 조문으로 시장 전반에 성평등정책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행정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시의 실·국장을 성평등정책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하였다.</p> <p>책임관의 역할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 및 관련부서를 총괄·조정·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책임관은 성평등 정책 업무 추진과정에서 실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장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실무담당관은 소관부서 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36조), 성인지 예산(제37조) 및 성인지 통계(제38조) 관련 사업 또는 업무의 점검, 성평등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제도개선,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등을 추진함으로써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성평등 정책 연구		<p>제50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아동과 피해여성(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진광역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02. 27 조례 제 3705호></p> <p>제51조(가동)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지원대책 강구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p>[본조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p> <p>제52조(가동) ①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성평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여성 아동 보호 지역 연대		<p>제40조(성평등 정책연구) 시장은 성평등의 효과적 실현과 추진을 지원하며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진광역시출연연구기관내에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연구부서를 설치한다.</p> <p>제41조(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①시장은 여성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여성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진광역시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를 둔다.</p> <p>②대진광역시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p>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직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평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1.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공무원 2. 여성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여성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본조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p>		
	<p>제5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제54조(회의) ①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5조(안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지역연대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위원은 지역연대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p>		
	<p>제56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지역연대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 제57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지역연대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 ②시장은 지역연대에서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지역연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p> <p>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장등의 직무, 의견 청취, 운영세칙, 간사 등은 제31조, 제35조, 제37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지역연대”로 본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개정 2009. 02. 27 조례 제3705호></p>	<p>제42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시장은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p>	<p>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증진과 성 주류화 조치의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추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다.</p>
성평등 정책 지원		<p>제5장 성평등실현기금</p> <p>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리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조례명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을 ‘성평등실현기금’으로 변경하고, 헌부모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체계의 방만함을 정리는 차원에서 제39조와 제38조를 한 개의 조로 재구</p>
기금의 설치	<p>제38조(여성발전·복지기금) 여성,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제5장 성평등실현기금</p> <p>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리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조례명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을 ‘성평등실현기금’으로 변경하고, 헌부모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체계의 방만함을 정리는 차원에서 제39조와 제38조를 한 개의 조로 재구</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제3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 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 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p>성하였다.</p>
<p>기금의 용도</p>	<p>제4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5.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교육비·직업훈련 및 생계비·질병치료비·주택임대지원금<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6. 한부모가족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비<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p>②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p>개정안 제43조의 같은 이유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p>	<p>개정안 제43조의 같은 이유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p>
<p>기금의 관리· 운용</p>	<p>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p> <p>②기금집행은 전년도 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p>	<p>제4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p> <p>②기금집행은 전년도 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국장</p>	<p>-</p>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국장<개정 2007. 12. 14 조례 제3582호> 2. 분임기금운용관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④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2. 분임기금운용관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④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p>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설치	<p>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전문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제4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진광역시 성평등·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
구성	<p>제44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항전문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 1. 복지여성국장<개정 2007. 12. 14 조례 제3582호> 2. 여성발전 및 한부모가족복지 관련분야 종사자<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 3. 여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1호></p>	<p>제47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진광역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풍부한 자</p>	<p>심의위원회의 활동에 행정력을 실어주기 위하여 위원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개정안 제47조 제3항 제4호 한부모가족에 관련된 규정은 제43조와 같은 이유로 삭제한다.</p>
임기	<p>제4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p>	<p>제4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p>	-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p>인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간사	<p>제46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된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제4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된다.</p>	-
회의	<p>제4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지원의 증지 및 회수	<p>제48조(지원의 증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 결정된 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p>제51조(지원의 증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 결정된 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위원장 등의 직무 등	<p>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장등의 직무, 의견청취, 운영세칙등은 제31조, 제35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07. 03. 16 조례 제3484호></p>	<p>제52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장등의 직무, 의견청취, 운영세칙 등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p>	-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수당 등	<p>제59조(수당 등) 제32조, 제35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참고인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그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3조(수당 등) 제8조, 제11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참고인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그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사무의 위탁	<p>제60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방법·절차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54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방법·절차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
사전 협의		<p>제55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정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임인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시행 규칙	<p>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참고문헌

- 김선옥 외(2008), 『성 주류화의 기반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박선영 외(2009),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토론회』자료집, 국회여성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김정란·배은경·변화순·서영주·정봉협(2009),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토론회』자료집, 국회여성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법제처, 『대구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http://www.law.go.kr>
- 법제처,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http://www.law.go.kr>
- 법제처,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http://www.law.go.kr>
- 법제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http://www.law.go.kr>
- 법제처,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http://www.law.go.kr>
- 법제처,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http://www.law.go.kr>
-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2006), 『부산시 여성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부산광역시의회.
- 서영주 외(2011)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영주·장명선·손문금·조연숙·양소영·이지현(2011),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손문금·정원희(2011), 『서울시 여성정책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측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
- 여성가족부(2011), 『2011년 16개 시·도별 성평등 수준 및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이재인(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제18집 2호. pp.67-88.
- 임중호(201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여성가족위원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경기여성연대(2010), 『경기도 성평등! 제도와 실천의 경계를 넘다-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례 제·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성평등기본법안』, 의안번호 8652, 발의연월일 : 2010. 6. 23, 발의자 : 신낙균 외 42명.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여성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9854, 제출연월일 : 2010. 11. 9, 제출자 : 정부.
- OECD,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http://www.oecd.org/dataoecd/56/46/28313843.pdf>, p.13.

UN WOMEN, OSAGI Gender Mainstreaming(2001),
<http://www.un.org/womenwatch/osagi/conceptsanddefinitions.htm>.

부 록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부록 2.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워크숍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1. 대전여성단체협의회

1. 일시 : 2012년 4월 27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

3. 인원 : 4명 (김용금, 성순례, 주혜진, 이유라)

* 조례의 명칭과 용어

-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유지⇒ 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여성의 상징성이 사라질 수 있음
- 성평등기본조례로 수정⇒ 최근의 흐름에 맞게 성주류화, 성인지의 의미를 담도록 수정해야 함
- 조례의 용어들(성주류화, 성인지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명시해야 함

* 여성관련 추진기구, 체계의 역할

- 여성특보,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지속성과 역할, 운영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보제공의 대중화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8조 [정보제공] : 대전여성 관련 백서 및 자료를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 및 내용의 대중화와 효율성 증진에 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 대전시 여설발전기본조례 22조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 여성단체의 기관 운영 및 행정적 지원과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명시할 때 ‘~해야 한다’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 필요에 따라서라고 규정할 경우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 여성단체의 자원봉사 지원에 대하여 시의 구체적인 협조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전국적 여성관련 축제 및 행사(전국여성대회, 녹색성장 위그린 등)의 적극적 유치 및 시행을 위한 시의 지원과 협조에 관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여성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기회마련에 관한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2. 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1. 일시 : 2012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2.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

3. 인원 : 4명 (채계순, 이현숙, 주혜진, 김은하)

* 조례의 명칭과 용어

-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유지⇒ 여성은 아직도 약자의 입장이므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기본조례로 수정⇒ 여성만을 강조하면 성평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
-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의 규정으로 제시해야 함
- 전체적인 용어를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을 참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추진체계의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3장 [여성정책위원회] : 여성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를 참조⇒ 대전시도 각 국·실 정책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해 책임관/담당관의 지정과 역할을 명시해야 함

* 성평등 촉진 시책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3장 [성평등 촉진 시책]을 참조하여 대전시도 첨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결정권이 있는 직책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첨부할 필요가 있음
- ①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15조 [공직·관리직 승진목표제]를 참조하여 대전시에 첨부할 필요가 있음
- ②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16조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등]를 참조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부분을 대전시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③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17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참조하여 대전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므로
- ④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0조 [성평등 의식제고] 참조하여 1항과 3항의 성평등 교육과 시설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부분은 대전시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구체적, 지속적, 상시적 홍보 강화에 대한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예 : 시의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1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을 참조하여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17 [복지증진]도 정리될 필요가 있음⇒ 즉,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한 부분은 분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1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2항을 참조하여 대전시도 이러한 예방교육을 명시해야 함. 또한 더 나아가 여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교육의 실시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1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3항을 참조하여 대전시도 교육·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함. 이에 더불어 의료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1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4항은 가해자의 교육은 법무부에서 실행해야 하므로 삭제가 필요함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3조 [여성의 복지증진] 2항을 참조하여 대전시도 복지증진에 있어서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보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복지증진의 대상자로 취약계층에 비정규직 여성, 이주민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을 추가해야 함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4조 [도시공간 및 시설]을 참조하여 추가하되 여성친화 도시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8조 [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참조하여 대전시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① 1항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라는 구절이 명시되는 것이 좋음

② 2항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30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참조하여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22조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의 용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발전기금(서울시 5장 / 대전시 4장)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40조 [기금의 용도] 5항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대전시 5장)

- 상시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연 2회 이상의 회의 개최를 명시하는 것과 같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5장 자체를 별도의 조례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폭력 예방의 근거가 되기 때문 (정부에서 조례 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 대전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52조 [구성]은 위원회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지만 부족하고 2/3이상은 민간인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와 솔루션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야 함

3.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1. 일시 : 2012년 5월 3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

3. 인원 : 4명 (이옥분, 이선숙, 주혜진, 이유라)

* 조례의 명칭과 용어

-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유지⇒ 성평등이라 하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념 자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또한 명칭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명칭이 포함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함

* 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3조 [시의 책무]에 대전시 차원에서 대전양성평등강사에 대한 관리나 양성을 위한 모니터링이나 보수교육과 관련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촉진 시책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17조 [복지증진] 2항에도 미혼모에 관한 복지증진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음⇒ 따라서, 혜택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일반가정에서 양육하는 양육미혼모나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17조 [일·가정 양립 지원] 조항들은 모두 보육에만 초점이 맞춰짐. 특히, 7항과 8항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문이 있음. 차라리 7항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마을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전시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함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18조 [모·부성의 권리보장]이라는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너무 일반가정의 틀 안에 초점을 맞추고 지나치게 성평등적인 관점에 끼워 맞춰진 것 같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3조 [여성의 복지증진] 2항은 미혼모 관련 사항을 한 부모 가족으로 포함시키면서 시설에 관한 사항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대전시는 시설 외에 일반가정의 미혼모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4조 [도시공간 및 시설]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따로 특화되어 구성될 필요가 있는가? 성평등 관련 부분에 일부 조항으로 명시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5조 [여성의 건강증진]을 참고하여 대전시도 따로 분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4. 대전여성단체연합

1. 일시 : 2012년 5월 4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

3. 인원 : 4명 (김영남 전숙희, 주혜진, 이유라)

* 조례의 명칭과 용어

- 성평등기본조례로 수정⇒ 여성에게 포커스를 주는 것보다 사회의 지향점이나 방향 제시를 위해 포괄적인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서울시의 성평등정책기본조례라는 명칭에서 정책이라는 단어를 빼고 성평등기본조례로 가는 것도 좋을 듯함

* 추진체계의 미흡

- 현재 여성정책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3장에 명시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에 대한 조항을 2 장으로 명시해야 함
- 여성정책위원회 참여위원의 기존 15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해야 함(광주는 21인)
- 당연직 위원으로 각 국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 필요
- 위촉직 위원에 여성단체협의회장과 같이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보다 지역별, 세대별, 분야별 고려하여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시하는 것이 좋음 (다양한 분야의 고려 필요)
- 위원회 회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촉진 시책

- 성평등 관점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정책을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12조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등]을 참조하여 대전시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24조 [도시공간 및 시설]을 참조하되 대전시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서울과 다르게 여성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대전의 메리트를 높일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12조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의 30%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인력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서울시 성평등정책기본조례안 6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여성정책의 시행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시민욕구 조사와 관련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음
-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13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에 여성채용목표제를 서울시의 15조 승진목표제와 같이 더 강력한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전 복지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음
- 여성발전 기금의 사용의 의결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명시해야 하고 의결에 민간참여가 중요성을 반영해야 함
- 현재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44조 [구성]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대다수가 복지전문가로 편향되어 있음. 따라서 여성정책위원회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대전시 5장)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5. 대전YWCA

1. 일시 : 2012년 5월 8일(화) 오후 3시 30분

2.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

3. 인원 : 5명 (오현숙, 권부남, 강은혜, 주혜진, 이유라)

* 제 2장 : 여성정책 ----->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

* 일·가정양립에 대한 내용 삼입

1. 배경

① 우리 나라의 다른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율과 남녀 고용율 격차, 그리고 장시간 근로환경은 취약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힘들게 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②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이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만, 별도의 지침개발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실제 수요를 흡수하거나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2. 대전YWCA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노하우로 일·가정 양립이 검토될 때 적극적 자문 가능함

- 따라서 조례에는 ‘시민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일·가정 양립을 세부항목으로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칙에서 그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방법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정전	개정의견
제 14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 있어 양성평등에 관한 교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조 (성평등의식 제고) ①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 있어 성평등에 관한 교유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연 ...회 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조(복지증진) ③ 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등 어려운 여성과 여성노인, 농촌여성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⑥ 시장은 미혼모, 탈성매매 여성, 부랑부녀자

	의 자립을 위하여 일정기간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등 어려운 여성과 여성노인,농촌여성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하며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 ④ ⑤	(여성의 복지증진) ②,③통합 시장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결혼이민여성, 농촌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④,⑤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방지 등)으로 별도분리
제18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③시장은 공공시설 또는 공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여성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③시장은 공공시설 또는 공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특정성에 불리하지않도록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19조(영유아보육)	③ 시장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보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영유아보육 등) ①시장은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 촉진 및 영유아보호와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대전시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음 제19조 ①분리해야함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촉진 :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시장은 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차별문제개선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등등 서울시 임신출산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에 대한 내용이 일 가정양립지원으로 변경되어야 함 서울시처럼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내용도 없음 서울시 참조 : 맞벌이부부 중 보육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p>교육을 수강할 경우 자녀를 위한 놀이방 등을 교육기관이 설치하여 교육시 어려움이 없도록 함 직장에서 육아교육 실시</p>
<p>제 20조(모성의 보호) 시장은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양육등 모·부성권을 보호하고 모·부성권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제 21조 (여성경제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동등한 경제활동 참여등) ①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차별 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기업운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 · 채용 교육 훈련 승진 · 퇴직 · 경력개발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임신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⑥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p>

부록 2. 대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워크숍

1. 일시 : 2012년 6월 18일(월) 15:00~17:30

2.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인원 : 시민 및 전문가 30 여명

* 조례의 명칭과 용어

- 요약의 성평등헌장 명칭은 적절하다고 봄
- 하지만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똑같이 서술하고 있지만 첫 번째 조항만 여성만 뽑아 놓은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른조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성, 여성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성평등 기본조례에 관한 명칭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적절한 것 같음

* 기본조례의 구성내용

- 1장 1조에 성평등기본조례라면 그쪽에 맞게 써야하는데 여성쪽에 더 우선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짐. 또한 성평등실현은 궁극적 목적이 있는거 같고 실현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로써 축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축진과 실현이라는 것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같다.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실현과 축진이라는 용어가 번복해서 나온다. 용어의 정리가 필요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인권보호라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음
 - 2조 3항의 양성평등의식을 성평등의식으로 바꾸었으면 함
 - 3조 여성의 얘기만 계속 나오면 남녀노소,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움. 4항에서 양성평등실현을 성평등실현으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1.2.3항에는 모든 시민이라 되어 있는데 모든 시민을 써야 하는지 시민이라 써야하는지 동일성을 가졌으면 좋겠음
 - 4조 가변이 성평등축진이고 쪽 나와있는데 가항의 성평등축진에 밑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음. 또한 뒷부분과 조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음. 또한 3항에 이에따라야 한다 다음에 “다만 재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 4조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이고, 5조부터 12조까지는 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성평등위원회가 추진체계인것인지 장제목과 내용이 적합한지 약간 의문이 감
 - 5조 4항이 꼭 필요한지?
 - 6조 과거엔 15인인데 25인 이내로 확대되면서 확대시킨 이유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또한 4항은 49조와 겹쳐서 수정이 필요함
-

-
- 7조 위원회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음. 또한 위촉기준이 너무 광범위함
 - 13조 그전보다 약간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이 있음
 - 13조부터 35조까지는 성평등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이란 문제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순서상 제2장 제4조 제3장 성평등정책을 같은 장에 넣고 제목을 성평등 정책으로 변경하여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 14조 2항 대전시를 시로 표기해야 맞지 않나 싶음
 - 16조 이것은 여성발전기본조례법에 가깝지 않나 생각함
 - 17조를 39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 싶음. 또한 역할과 그 역할게 맞게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감.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여성일자리 추진협의회란식으로.
 - 19조 여성채용목표제에서 관리직승진목표제로의 시행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러가 있다. 여성채용목표제라는 것은 제도에 수혜범위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관리직승진목표제는 여성중에서도 소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일 수 있다. 또한 역차별의 가능성도 있음
 - 20조 3항에 성평등교육보다는 성평등실천교육으로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음
 - 23조 2항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25조 이부분은 여성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모두 필요한 사항이여서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다 생각함.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가 우선시되어야한다 생각해서 이 문구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여성가족 친화도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음.
 - 29조 5항 시장은 여성이 임산출산 이라고 넣어야 할 것 같음.
 - 32조 자원봉사까지 성평등기본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생각함
 - 36조3항 반영하야를 반영하여로 바꾸어야 함
 - 40조 여성정책센터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성평등할 수 있는 명칭이나 센터를 넣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함
 - 41조 성평등보다는 여성과 아동의 범죄예방과 보호와 지원대책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41조를 삭제하고 타시도의 사례처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공개의 조례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를 필요한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표기했음 좋겠음
 - 42조 38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고 싶음
 - 43조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를 의무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여야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음
 - 44조 한부모가족 지원관련한 내용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 2001년 12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기본방안에 따라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위해 유사한 기금 통합차원에서 한부모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통합하여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현행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한부모가족기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2015년까지 목표액은 여성발전 50억 한부모가족 50억으로 총 100억임. 따라서 제44조 한부모가족관련사업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족 복지기금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함. 즉 한부모 가족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
-

하거나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등에 관한 조래에 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45조 3항 개편 시에 용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련국장, 여성정책관련 주무과장으로 바꾸면 어떠할까 싶음
- 55조 용어자체가 여러 단어를 쓰면서 개념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음
-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 자문하는 기구이므로 장을 따로 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 같음
- 여성대표성 강화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을 봤을 때 공공기관과 대전시가 가사나 육아에 공동주체로써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으면 좋겠음
- 간사의 역할이 빠졌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재반업무를 처리해야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헌장

- 활용방안에 헌장에 기초한 성평등 체크리스트의 보급과 점검 보고대회 개최가 있는데 장치나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생각함
- 8개 조항 중에서 남성여성 여성남성을 잘배치했지만 맨 마지막에 여성을 또 한번 강조했음
- 양성평등헌장이 성평등헌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개정에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이 성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음. 과거에 남녀양성평등의 한 단계가 협력하는 것임. 남성이 부족한 부분을 여성이 끌고 여성이 부족한 부분을 남성이 끌어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도전적인 생각을 해봄. 헌정과 조례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아니면 둘다인가? 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것과 어느 것이 다르길래 개정안을 써야 하는가?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이론, 도움, 나눔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추진체계의 미흡

- 성평등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담당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운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양한 삶의 영역에 다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관계된 국에서는 국장급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정책연구보고서 2012-05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 및 추진전략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6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 042-530-3549 팩스 : 042-530-3559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신세기사 TEL 042-488-6577 FAX 042-488-657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